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0. 1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법령 약어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성폭력처벌법

실종아동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정경제범죄법

## 울력과 품앗이

집필위원(가나다 순)

권소연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강원 국 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민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영연 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창효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서치원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정민 변호사(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 목 차

<b>1. 서론</b> .....	<b>8</b>
가. 연구 배경 .....	8
나. 선행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	9
다. 연구 목적 및 방법 .....	11
<b>2.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분석</b> .....	<b>14</b>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사례 1 흑산도 노예사건 .....	14
사례 2 염전노예사건 .....	19
사례 3 사찰노예사건 .....	23
사례 4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가해자 : 고물상주인) .....	26
사례 5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가해자 : 피해자 가족) .....	28
사례 6 원양어선 노예사건 .....	30
사례 7 후견인에 의한 착취사건 .....	32
사례 8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횡령 사건 .....	35
사건 9 상주노예사건 .....	37
사건10 곡성 품앗이 사건 .....	40
<b>3.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분석</b> .....	<b>46</b>
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	46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	47
다.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	47
라. 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판 .....	48
마.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음 .....	49
바. 유인자에 대한 수사 미진 .....	50
사. 소극적인 법적용 .....	51

<b>4.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실체법적 문제점</b> .....	<b>56</b>
가. 관련 규정 해석의 문제 .....	56
나. 관련 규정 적용의 문제 .....	64
다. 양형상 문제 .....	68
라. 장애 인지(認知)적 관점의 부재 .....	70
마. 장애인 대상범죄의 통계 부재 .....	71
<b>5. 국제인권 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b> .....	<b>74</b>
가. 유엔 .....	74
나. 유럽인권법원 .....	80
다. 미국 .....	90
라. 영국 .....	100
마. 유럽 국가별 판례 .....	101
<b>6. 대안 및 개선방안</b> .....	<b>108</b>
가. 실체법상 개선방안 .....	108
나.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	111
<b>7. 결론</b> .....	<b>122</b>
<b>참고문헌</b> .....	<b>124</b>
<b>부록</b>	
부록1 제1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126
부록2 제2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134
부록3 제3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147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1장

## 서론

- 가. 연구 배경
- 나. 선행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 다.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이 보고서의 부제인 ‘울력과 품앗이’에서 ‘울력’은 ‘힘(力)을’, ‘모은다(울)’, ‘힘을 합한다’는 의미로서 ‘협동’의 우리말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앗이’는 노력을 의미하는 ‘품’을 ‘앗아 간다(앗이)’는 의미이나, 단순히 품을 앗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앗아간 만큼 되갚는 노동의 교환 형식을 의미 한다<sup>1)</sup>. 이는 모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담은 풍습이다.

그러나 ‘울력’은 최근 한 사찰의 주지가 5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30여년 간 대가를 주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일명 ‘사찰 노예’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의견서에 사용했던 용어이며, ‘품앗이’는 6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17년간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각종 농사일과 밭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은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 도리어 장애인 노동착취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역시 피해자 중 대부분이 장애인이었던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으로, 높은 국민소득과 빠른 경제성장, K-POP과 한류를 자랑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수<sup>2)</sup>의 장애인이 광범위한 지역 일대에서 수 십 년간 현대판 노예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까지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건의 본질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인간 존엄의 훼손과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복지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와 존엄을 해하는 것(광주고법 2014노198)”,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광주고법 2014노248).”,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목포지원2014고합74)”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 두산백과, 인터넷 검색, <http://www.doopedia.co.kr/>, <2020. 9. 6. 검색> 참조

2)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 수가 정확히 집계된 자료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파악한 63명의 피해자 명단이 거의 유일하나, 이는 신안군 신의면 한 개 섬에서만 발견된 피해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염전노예사건 민간 조사결과”,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4. 6. 9.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인권의 침해자들은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가를 치렀을까? 침해된 사회적 정의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복구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염전노예 사건의 결과를 보면 실망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였으며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살인 미수가 포함된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을 뿐 대부분이 징역 1년 정도의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sup>3)</sup>.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노동착취사건은 지속되고 있다. 매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타이어 수리점 노예(2015년)’, ‘중국집 노예(2016년)’, ‘딸기밭 노예(2017)’, ‘잠실야구장 노예(2018)’, ‘사찰노예(2019)’, ‘가두리 양식장 노예(2020)’ 등 장애인 노예<sup>4)</sup>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도 총 94건의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었다<sup>5)</sup>. 그럼에도 지속되는 장애인노동착취사건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면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은 마치 불처벌의 관행이라도 있는 듯하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노동착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의 노력을 담은 것이다.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대리인단은 사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피고들로부터 받은 변호사 보수를 쾌척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 나. 선행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된 계기는 앞서 언급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14년 6월 9일에는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

3) 김강원, 『염전노예사건의 반인권성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 2014. 93면

4) ‘노예’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화 격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 반인권성, 피해자가 처한 비극적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148면

책위원회,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서 형사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②수사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③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는 주로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대'로 규정되면서 장애인학대에 관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2016년 3월 21일에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주최로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별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4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에서도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미약과 피해자 지원 미흡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과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론회로는 2018년 9월 11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김상희와 공동 주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발제자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통상적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처리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록 장애인복지법이 노동강요행위 금지를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근로기준법과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현행법 규정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유인행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2019년 7월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도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장애인노동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①장애인 노동착취범죄에 적용하는 법률이 일관성이 없고, ②사건이 중대함에도 단순히 임금체불로 접근되며, ③유입 단계의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 ④형량이 미약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장애인학대범죄의 개념정의와 가중처벌, ②국선변호사와 실질적인 보조인제도, ③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 필요, ④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를 ‘인신매매’문제로 접근한 것으로는 2015년 8월 31일 이자스민 의원실과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염전노예사건의 문제점으로 ①브로커(유인단계)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 ②지역적 관행과 인식의 문제, ③피해자 지원의 미흡, ④‘선불금’을 통한 예속 문제, ⑤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⑥형량의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가 인신매매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과 대응을 위한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염전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해결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국회의원 안철수 등 11인은 2014년 12월 31일 ‘염전노예 방지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김기선 의원 등 11인은 2015년 10월 16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으나 각각 임기만으로 폐기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방안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며, 하루 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다.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중에서 선정한 10건의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및 불기소 이유서,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절차상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구조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되는 일 자체가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법적 지원이 공익·인권변호사들의 자원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에 비하여 접근 가능한 사건과 확보 가능한 문서 자체가 희소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밝힌다. 대부분 사건을 직접 대리하거나 참여한 변호사가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반면에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부딪혔던 한계와 문제인식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에 대한 정의와 식별,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유엔의 국제인권법규들과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 각국의 판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례들을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Modern Slavery)’,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로 다루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형량을 최장 종신형까지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확한 처벌규정을 찾기 힘들고, 형량이 낮으며, ‘관행’이라거나 ‘숙식을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묵인하는 실태를 비교법적으로 밝히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미국 장애인노동인신매매 전문가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분석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 사례 1 흑산도 노예사건
- 사례 2 염전노예 사건
- 사례 3 사찰노예사건
- 사례 4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 고물상 주인)
- 사례 5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 피해자 가족)
- 사례 6 원양어선 노예사건
- 사례 7 후견인에 의한 착취사건
- 사례 8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횡령 사건
- 사례 9 상주노예사건
- 사례 10 곡성 품앗이 사건

## 2.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분석

### 사례 1 - 흑산도 노예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13711호

당 사 자 : 1954년생, 남성,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목포에서 생활 중 2002년 모 직업소개소를 통해 흑산도에 오게 되었으며, 이후 흑산도에서 2019년까지 노동력착취를 당해왔다. 피의자 A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 27일 까지, B(사망)는 2012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피의자 C, D(C, D는 부자관계)는 2012년 10월말부터 2019년 7월 16일까지 가두리양식장, 멸치액젓 포장작업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 (2) 사건진행과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 A, C, D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노동력착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 준사기(형법 제348조 제1항)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은 2020. 2. 27. 피의자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인지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발달장애인법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실시한 피해자 조사에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을 거부하고 퇴실을 요구하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 피해자 진술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3회(2019. 8. 7., 2019. 9. 30., 2019. 10. 28.)에 걸쳐 라포(Rapport)를 형성하며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심적으로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의 상담실에서 참고인진술을 했으며 전 과정에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들이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수사 시 다그치듯 물어보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얼버무리며 답변하는 성향이 있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경찰에서는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위 관련 법률에서는 신뢰관계인이 동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사진행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단 1회의 피해자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이었던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동석을 거부하였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피해자의 지적능력 정도’ 관련 판단

검찰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중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거나 일부분의 진술을 다소 과장한다는 점,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능이 매우 낮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정도의 능력이나 경제관념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을 관찰해보면, 피해자는 수를 셈하거나 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본인의 이름을 쓰는 정도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나, 그 외에 글을 읽고 씌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은행창구 직원에게 돈 인출을 요청해서 출금할 수 있으나, 스스로 ATM기를 이용할 수 없다. (ATM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돈을 구체적으로 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숫자로 써진 금액에 대해 개략적으로 읽을 수 있으나, 자릿수에 기초하여 명확한 크기를 인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235,000원을 235만원으로 읽고, 4,300,000원을

43만원으로 읽는다.)

피해자는 자주 이용한 병원, 마트 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잔돈 계산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거스름돈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금을 지불하여 필요한 물건을 살 수는 있으나, 10만 원 이상의 물건에 대해 5만 원 권 혹은 1만 원 권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히 셈하지 못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흑산도에서 지내면서 통장을 소지·관리하고 있었으며, 흑산면이나 목포에 가서 생필품 구입비, 병원 진료비, 의류 구입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실제로 피해자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일상생활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규모 있고 계획 있게 금전을 관리하거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 등 장기목표를 위한 금전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

## (2)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실력적 지배’ 관련 판단

검찰은 피해자가 흑산도를 벗어나 목포 병원에 자주 갔다는 병원기록, 피해자가 자주 도망갔다고 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처는 피의자들의 집 안 창고 혹은 걸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상시 근로 제공 대기상태였다. 특히 피의자 D는 피해자가 목포 병원에 가기 위해 배를 탈 때마다 동행하였음을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실력적 지배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노동력착취유인의 구성요건인 실력적 지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 (3) ‘노동력착취 가해자의 범행동기’ 관련 판단

검찰은 낭장망 어장과 전복 양식장의 특성 때문에 성어기와 휴어기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업장이라서 휴어기 때는 거의 일이 없으므로 피의자들이 (굳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X(소개업자), Y(어촌계장) 등의 일부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원용하였다. 피의자 A, C는 형제 관계이고 피의자 C, D는 부자관계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참고인들 역시 피해자의 이전 사업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를 채택하여 판단하였다. 검찰이 애초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계속근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수사의 쟁점사항으로 고려한 것 자체도 온전히 가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기준에 불과하다.

### (4) ‘피해자의 노동력제공(노동강도)’ 관련 판단

피해자 진술조서상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① 2019. 8. 7. 피해자 조사

-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우고요. 고양이, 개, 거위에게 밥을 주고, 집에서 키우는 염소 5마리를 위에 갖다 나아 되요.
- 멸치 잡고 통발로 장어 같은 거 잡고, 주낙도 하고요. 염소 풀도 주고, 개밥도 주고 거위 밥도 주고요
- 멸치 팔러 섬에 가요. 저도 같이 가서 바구니에 멸치를 담고 사장님이 가서 팔아요.
- 멸치를 잡고 들어온 날에는 솔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 넣은 다음에 삶아요. 삶으면 건조기 다이에 올려서 햇빛에 말려요.
- 배타고 나가지 않을 때는 그물 손질하고요 액젓을 플라스틱 50개에 담아요. 150개 담을 때도 있어요.

#### ② 2019. 9. 30 피해자 진술조서

- 통을 매일 닦아야 해요. 통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물도 맨날 닦아줘야 되요. 여

- 기서는 노는 시간이 없어요.
- 전복 밥줘야 하니까 아침마다 배타고 다시마도 뜯으러 가야되요. 노는 날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어딜 가지 못해요.
  - 저녁 때 되면 밥 먹고 다시마 뜯으러 가자고 해요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염소 5마리 정도’, ‘반찬용으로 재배하는 텃밭’ 등 피해자가 하는 일의 강도를 축소하여 판단하였다. 즉 검찰은 여타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노동 강도가 낮았다(즉, 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만 듣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 (5) 법령적용 관련

피해자의 사건은 전형적인 장애인노동력착취, 이른바 “노예”사건이다.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행위 금지 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괴롭힘 등의 금지, 정신적 장애인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등)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적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 사례 2 - 염전노예(완도 고금면) 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4형제2241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형제3384호

당 사 자 : 1965년생, 남성,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완도군 고금면에서 가해자 A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노동력착취를 당해왔다.

#### (2) 사건진행과정

##### (가) 1차 수사결과 - 내사종결

2011. 6. 17.자 전남완도경찰서 '수사첩보보고서'에 의거할 때 경찰은 염전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고용주 등 면담실시결과 피해자가 5년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파악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 2011. 6. 22. 전남완도경찰서에서 1차 조사(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조서)가 이루어졌고, 준사기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2011. 6. 27.자 전남완도경찰서 수사보고(준사기 관련)에서 확인되나, 이 사건은 2011. 6. 29. 전남완도경찰서에서 목포고용노동지청으로 인계된 것이 확인된다.

2011. 7. 19. 목포고용노동지청 조사(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가 이루어졌으나,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의견으로 2011. 7. 25. 수사지휘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차 수사결과 - 약식기소

2014. 4. 8.자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염전피해자 수사이의 제기'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2011년

내사종결된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완도경찰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경찰서는 전남장애인권센터의 이의제기 후 2014. 4. 14.자 '염전근로자임금착취 동향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목포고용노동지청으로 사건을 인계하였고,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2014. 5. 2.자 범죄인지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자백, 피해 장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59,106,29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2014. 6. 3.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2014. 9. 3.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4형제2241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4. 11. 14. 위 구형대로 약식명령을 선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약1274)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정식 재판청구가 있었으나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정131).

결국 2차 수사결과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임금 59,106,920원(최저임금 기준) 미지급으로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 500만원 선고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 (3) 3차 수사결과 - 구속기소

2015. 1.경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이 사건을 다시 고발하였고 노동력착취 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제4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위반(제87조 제1항, 제8조 제2항)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2015. 7. 13.자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위반은 기소유예처분,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에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가 반발하였다.

고발인 측의 항고에 검찰도 자체 재기해 추가수사를 진행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지불항 제31호). 추가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6. 6. 20. 가해자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금지), 폭행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2016. 12. 8. 제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단222) 쌍방항소하였고,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2017. 4. 25.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노29).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 (1) 수사주체

1차 수사 및 2차 수사 모두 완도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직접 수사하지 않고 목포고용노동지청으로 사건인계 또는 동향통보가 이루어졌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의 경우 경찰은 일단 고용노동지청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사주체와 관련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다.

### (2)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동석 유무

1차 수사 시 완도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모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동석하지 않았고, 3차 수사는 후견인, 시민단체활동가가 동석하여 진행하였다.(2차 수사는 정확하게 확인 불가하다.)

### (3) 수사의 기본원칙(가해자·피해자 분리) 준수여부

1차 수사, 특별히 고용노동지청 조사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내용이 3차 수사 때 확인되어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포함되기도 하였고,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에서도 이 부분이 인용되어 국가의 책임근거로 실시되었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상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위임각서'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1차 조사 및 2차 조사(시민단체 이의신청 전 단계) 때에도 위임각서를 근거로 노동력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가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청, 경찰청, 검찰청 모두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이해는 결국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1차 수사-내사종결, 3차 수사-구속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2차 조사 시 노동력착취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만 적용하여 기소되는 등 수사기관의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강제근로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3차 수사 결과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으로 기소된 것을 볼 때,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수사결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 사례 3 - 사찰노예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18형제26360호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18형제52873호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20형제5764호

당 사 자 : 1966년생, 남성,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2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A가 주지승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사찰에서 약 3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며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명의도용(부동산 구입 및 은행계좌 개설 등) 피해를 당하였다.

#### (2) 사건진행과정

##### (가) 1차 수사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은 사찰의 주지승이 행사신분으로 지내 온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2015. 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에 대해 2018. 10. 24. 형법상 단순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18형제26360호)

노동력착취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되었다. 명의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주택 2채를 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장에 죄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재했기에 이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른 법률적용에 대한 검토 없이 '각하'로 불기소처분 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18형제52873호)

## (2) 2차 수사

시민단체의 2019. 7.경 고발장 제출을 통해 노원경찰서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다. 노원경찰서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이 존재함에도 전담경찰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관 교체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져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노원경찰서의 재수사를 통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노동력착취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울력'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020. 2.경 송치되었음에도 2020. 6.말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고발인 및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2020. 7. 1.자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이 사건 기소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8. 10.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고,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불기소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발달장애인법 제1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라는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원경찰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모두 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수사관교체신청을 통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검사도 발달장애인전담검사가 아니기에 피해자 조사만이라도 발달장애인전담검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발달장애인전담검사 입회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노동력착취 관련 부분

피해자도 스님으로서 함께 절에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했기에 노동력착취가 아니라 협동 관행인 '울력'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2차 수사 경찰단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금전적 착취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괴롭힘금지)과 장애인복지법위반(강제노동금지) 부분은 불기소하였다.

이미 노동력 제공과정에서 12건의 폭행(당사자는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기억함)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피해자의 노동력제공은 자발적인 것이 아님은 명백하기에 장애인복지법위반(강제노동금지)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도 수사기관이 장애인의 노동력착취 문제를 단순히 재산상 법익 침해의 문제로만 판단할 뿐, 자유권 및 신체적 법익 침해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 (2) 명의도용 관련 부분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 가족이 적용법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불기소처분)한 부분은 얼마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빨리 종결할지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법위반사실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례 4 -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 고물상 주인)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6290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31557호

당 사 자 : 1958년생, 남자, 지적장애 2급

피해기간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서 2006. 6. 20.경부터 2018. 3. 8.까지 고물상 업주로부터 약 12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였으며,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리어카를 끌고나가 주변 파지를 모으는 일을 했다. 잡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진행된 하루 노동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야구 경기가 열릴 때면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 오전에야 잠을 잤다. 고물상 업주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 사건진행과정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사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자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의 조사가, 부당한 영리 행위금지 등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검찰도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노동력착취 사건에 대해 수사주체가 노동청, 경찰 등으로 분리되고, 동일한 사건이 분리기소 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노동력착취사건은 임금체불사건이라기 보다는 장애인학대사건이기에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혹시라도 근로기준법위반 등

으로 기소될 부분이 있다면 분리기소가 아니라 함께 정식기소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노동력착취 관련 피해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도 도시일용노임 등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피해자의 노동력제공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현격히 떨어진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사례 5 -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 피해자 가족)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19형제836호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제9187호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443 재정신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19형제30258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등

당 사 자 : 1958년생, 남자, 지적장애 2급

피해기간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서 2006. 6. 20.경부터 2018. 3. 8.까지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족인 친형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및 고물상 업주가 지급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임금<sup>6)</sup> 등 일체를 가로챘다.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금액만 약 7천만 원에 이른다.

친형이 모든 금원을 가로챈 탓에 피해자는 2018. 3. 8.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구조될 당시 수중에 단돈 700원 뿐이었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계절과 관계없는 단벌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사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밥 덩어리와 김치 혹은 관객이 버리고 간 곰팡이 핀 빵 등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친형은 어찌다 한두 번 피해자를 찾아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지적장애인 친동생에게 ‘오래오래 일하라’라고 말하였다.

#### (2) 사건진행과정

피해자가 횡령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를 하였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정신

6) 월급은 야구 시즌에는 몇 십 만원에서 비시즌에는 몇 만원 정도(저임금 혹은 무임금)로 지급되었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는 직접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청을 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019. 7.경 시민단체가 고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2020. 1. 8. 시한부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거한 고소인(피해자) 결과통보까지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었고, 시민단체는 이러한 절차위법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604800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검찰은 지적장애인 친동생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 모든 금전을 착복한 가해자(친형)에 대하여, ①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다, ②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유일한 혈연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③ 노후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등 관련사건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변명(피해자를 보호하였다는 취지)을 인정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 사례 6 - 원양어선 노예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20943호 특경(사기) 등

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제594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5749호 장애인복지법등 위반

당 사 자 : 1970년생, 남자,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년

#### (1) 피해사실

피의자 갑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의자 을은 부산세관공무원이며 둘은 부부관계이다. 피해자는 경계성 지적장애인으로 10년 넘게 원양어선 선원 생활을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 가족관계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이니 돈을 모을 수 있게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통장, 여권 등 일체를 넘겨받아 5억 원(추정)이 넘는 임금 등 일체를 착복하였다.

피해자는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 국내로 돌아오는 날이면 가해자의 감시에 따라 지정된 여관에서만 지내야 했고 알 수 없는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은행에 동행하는 등의 강요를 들어준 뒤에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여러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뒤 수익자를 가해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일을 쉬고 싶다는 피해자를 강제로 포항으로 이전시켜 말없이 지역을 이탈할 경우 마을 사람들 앞에서 폭언·폭행하는 가해행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간암 수술 전후에 간병인을 구하면서 연결된 먼 친척 관계의 이해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의 통장내역을 조회하면서 피해자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 (2) 사건진행과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현금출금, 보험

계약자명의변경 등 13년간 총 10억 원을 넘게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2019년 6월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절차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 6월 시민단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추가고발하여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공익변호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고소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건강상의 이유와, 가해자가 세관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가급적 조사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배정이나 진술의 어려움에 대한 조력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단순임금체불사건으로 수사진행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여느 일선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인식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장애등록 시기 및 심리평가보고서나 외형상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피해자의 장애등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2) 법령적용 관련

고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준사기(형법 제348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부분도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진행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례 7 - 후견인에 의한 착취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형제4231호 : 후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형제8746호 : 사업주

당 사 자 : 1961년생, 남자,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5급

피해기간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1년

#### (1) 피해사실

A는 1991.11.25.경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보호하다가 2004. 6. 28.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을 관리하였다. A는 2008. 2. 11.부터 2015.12.15.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188회에 걸쳐 합계 53,101,780원 상당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등을 횡령하였다. A는 2015. 5.경 경주시청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가옥을 매입하여 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도장을 찍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였다.

A는 '용돈이나 줌 주면서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며 기와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피해자를 맡겨 2012. 5.경부터 2015. 7. 9.경까지 공장 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공장 청소, 집안 일 등을 시켰다.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냄새가 난다는 등 항의하여 피해자 혼자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되었다. 당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용돈을 지급했다고 하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마찬가지로 공장 청소, 집안 일 등을 했는데 임금은 지급된 바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와공장에서 일한 기간(2012.5.~2015.12.) 동안 A는 월 1~2회 피해자를 방문했으나 얼굴만 보고 돌아갔다.

#### (2) 사건진행과정

경주시의 인권상담 및 지원 서비스 요청에 따라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피해자 면담을 하였고, 이후 경북연구소의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제공사업장의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최저임금법위반, 장애인 수급액 횡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그 밖의 후견인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다.

경찰은 사경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해자가 공장 근무 시 제대로 된 숙식공간이 아닌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냈음에도 후견인인 피의자가 월 1~2회 방문하여 얼굴만 보고 돌아간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후견인의 도움으로 치과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한약을 지어 준 적도 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방임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하였다.

포항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 중 근로관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포항고용노동지청으로 이첩되었다. 이후 조사결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정상적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 나.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 ①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공장에 보내질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겠다거나 거주공간을 옮기겠다고 한 것인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나 수단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월 1~2회 방문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기적이었는지, 방문하여 어떠한 필요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명백히 방임에 해당한다.

#### ②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기숙사에서 어떠한 의식주를 제공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특히 기숙사가 아닌 단독 컨테이너 이전 기거 후 의식주 환경이 더욱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항의할 정도로 위생상태 등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의식주가 제공 되지 않은 것으로 방임에 해당한다.

### ③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후견인으로서 법적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장장 등에게 그러한 법률상 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거나 그들이 인수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보건·의료, 일상적 돌봄이 제공되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아두었음이 확인된 이상 가해자의 행위는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 (2) 근로기준법 등 위반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정상적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때 정상적 근로제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정상적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사정에 불과한 것이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근로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호의관계로 돌봄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해자인 후견인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이상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어서 사용자들의 임금 지급의무 등 법적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 사례 8 -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횡령 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8형제767호

당 사 자 : 1978년생, 여성, 지적장애 2급

1955년, 여성,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2010년부터 2017년 약 7년

#### (1) 피해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동네 지인 관계로 피고인의 아버지 때부터 연고가 없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시골 농사일 등을 시키면서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고함을 지르면서 일을 나가라고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욕박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피해자 최00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

#### (2) 사건처리과정

2018. 3. 방송에서 인권보호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활상태를 취재하는 과정(2018. 4. 20. 2018년 ‘현대판 종살이 모녀’라는 제목으로 방송)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영주시 소재 변호사의 도움으로 횡령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급여 목적 외 사용의 점)으로 2018. 9. 13. 벌금 300만 원 선고(검사 항소 기각으로 확정), 노동력 착취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과정에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으며, 피해자 조사 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등이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다.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조사를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진행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팀장은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였다(당시 본인은 동석하지 않았으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사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 밖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피해자 최00의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사용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최00는 지적장애 2급으로 한글을 모르는 자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됨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동력 착취(장애인복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는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되어 이와 관련한 수사는 전반적으로 미진하였다.

## 사례 9 - 상주노예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1841호

피 해 자 : 1962년생, 남성, 지적장애 3급

피해기간 :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4년

#### (1) 피해사실

2016. 2. 23. KBS뉴스 보도 '현대판 노예'로 인하여 피해자의 14년간의 노예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는 일반농가 대비 10배 이상인 논 약 60,000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소 10마리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가족 등 아무런 연고가 없이 타인의 집을 전전하며 그 타인의 농사 등을 도와주고 임금을 받아 생활해 온 사람이다.

가해자는 2002. 1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의 농사일 등을 돕도록 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케 하여 2016. 2. 22. 경까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타인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8. 6. 1.부터 2016. 2. 19. 까지 성덕사에 거주하였던 2008. 7. 28. 부터 2009. 3. 5. 까지의 기간과 병원에 입원한 2009. 12. 16.부터 2009. 12. 19.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25일간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모내기철인 5월부터 벼베기철인 10월 이외의 기간 동안에도 논농사 일, 축사 일(소 먹이 주는 일 포함), 밭 일 등을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농사 일, 축사 일 등의 특성상 업무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새벽 5시부터 오후 6~7시까지 농사일과 축사 일을 하였으며, 병원 등을 가는 경우에는 병원 등에 가기 전과 다녀온 이후에 농사일과, 축사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집에 보내서 일을 대신 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개새끼’, ‘시팔놈’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팔아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모내기 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직접 목격하였다. 이외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삼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2016. 2. 22. 피해자가 KBS 방송국의 ‘현대판 노예 보도’ 취재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사건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는 온전히 지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사건처리과정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조사에서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인정한 부분으로 정리되었으며, 경북상주경찰서에서도 형법상 협박으로만 수사하였고, 결국 검찰청에서도 상습협박,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상주경찰서는 2016년 2월 24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은 없었다. 아울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2016년 2월 24일과 같은 달 26일 상주시청 소속 사회복지사의 ‘참관’하에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단순히 참관으로 진행되었을 뿐 신뢰관계인 동석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적용법조 관련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노동력착취가 이루어졌기에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 강제근로금지위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만 검토되었고, 형법상 협박죄로만 기소된 것은 문제라고 파악된다.

(2) 피해액 산정 시 기준 관련

수사검사는 피해액 산정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6만여 평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마리가 넘는 소를 키우는 피고인의 지배 아래 지속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노임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노동력제공의 기간' 관련

2016. 2. 23. KBS 메인 뉴스로 피해자의 노예 생활이 보도된 적이 있다. 해당 보도의 내용만 살펴보다라도 피해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농사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더럽고 좁은 창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후 진행된 2016. 2. 24. 경찰에서의 1차 피해자 진술, 같은 날 노동청에서의 1차 피해자 진술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축사일, 벼농사 관련 일을 했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2. 26. 노동청에서의 2차 피해자진술, 2016. 3. 11. 경찰에서의 2차 피해자 진술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매년, 5월에 며칠, 10월에 며칠만 일을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력제공기간을 산정한 것은 사실상 노동력 착취에 면죄부를 주었다.

## 사례 10 - 곡성 품앗이 사건

###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4002호

광주고등검찰청 2020고불항17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630

피해자 : 1959년생, 여성, 지적장애 2급

피해기간 :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7년

#### (1) 피해사실

피해자는 17년 동안 이웃 주민인 피의자로부터 성폭력과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망한 2001. 8.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수차례의 성폭력 범행(당사자의 배우자가 목격하기도 함)까지 저질렀다.

#### (2) 사건처리과정

2018. 9. 28. 담양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의 노동력 착취 피해사실을 인지하였고, 담양인권지원센터는 성폭력사건을, 전남장애인옹호기관은 노동력 착취 사건을 지원하였다.

2018. 10. 4., 2019. 1. 17. 두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2019. 1.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고발 죄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노동력 착취 사실 기재함)하였으나, 2019.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피해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는 불기소 처분(피의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내렸다.<sup>7)</sup> 피해자는 항고하였으나, 2020. 2. 광주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였고,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에 있다.

7) 노동력 착취 고발과 별개로 성폭력 사건은 수사를 진행(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6508호)하여 성폭력처벌 범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장애인위계등 추행)으로 2019. 7. 18. 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광주지방법원 2019고합278)이 진행되었으나 2020. 8. 21.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나.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 (1) 수사기관 내부 사무분장 관련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노동력 착취와 성착취 피해, 학대 피해를 함께 입었다. 관련된 죄명은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력유인 착취,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이다. 죄명이 다를 뿐 양 피해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주에서 일어나는 착취 범죄로서 단순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궤를 달리하며 보다 더 큰 틀로 접근하여 통합적인 관점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리로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이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폐단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법조를 결정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 검찰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 사안과 같이 수사기관 내부의 사무분장상 노동청과 검찰 공안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일반 경찰이나 검찰 형사부 관할이기 때문에 서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예 다른 적용법조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노동청 포함)을 단일화하여 사안을 포괄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 (2)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대질조사’ 요청 관련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거나 쉽게 심리적으로 복종상태에 빠진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만으로도 크게 위축되어 진술에 제한을 받으며, 이는 실제적 진실을 드러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아주 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신문을 하려고 들며, 대질 신문 과정에서 쉽게 합의를 권하거나 유도한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들은 옹호기관 활동가들과 피해자 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부적절한 대질조사를 시도하였고, 대질조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 진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처럼) 압박을 하였으며, 결국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3) 피해자 조사 및 피해사실 목격 참고인 조사진행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측 진술인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지적장애, 시어머니 사망 이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정, 피의자의 성폭력 등 피해자의 학대받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와 연관이 있는 참고인의 일부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원용하면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인 윤\*\*은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참고인 강\*\* 또한 피의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담당검사는 이러한 사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담당검사는 피해자의 노동이 품앗이의 일환이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사회연령 8세의 지적장애자인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품앗이로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반복된 성착취를 당하였고, 성폭행 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를 하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피의자의 변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 (1) 장애인복지법의 미적용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5조),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검사는 위 규정들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와 법률적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 및 적절한 공소제기의 무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이자 유일한 전제조건이다.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제되고 검사가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검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범죄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고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고발사실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결과 피해자가 품앗이 개념으로 피의자의 농사일을 도와준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담당검사는 근로감독관이 의율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한정하여 이 사건 실체관계를 판단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7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장애인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이득)죄<sup>8)</sup>가 성립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① 근로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품앗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② 피해자의 농사일이 품앗이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종속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인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8. 10. 4. 현장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인 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집의 일을 주로 많이 도와주었는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한 것에 일당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통장은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언어표현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보다 더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

8) ①장애인을 이용하여 ②부당하게 ③영리행위를 한 경우

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오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착취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새벽 또는 오후에 수시로 자신의 농사일을 시켰다. 이렇게 양 당사자의 지위에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취약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지적장애를 가졌고 사회연령 8세인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피의자의 농사일을 품앗이했다고 판단을 내린 문제가 있다.

##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 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 다.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 라. 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판
- 마.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음
- 바. 유인자에 대한 수사 미진
- 사. 소극적인 법적용

### 3.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 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서 진술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서는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과 제16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 및 제7항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01조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는 가해자와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하고, 제202조 제2항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들은 단지 조사를 받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넘어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조사 시 가해자를 분리해야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쉽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1항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형사소송법보다 넓히고 있다.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력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구대상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조사하려는 경우가 있었다. 흑산도 노예사건에서 검찰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하고 퇴실을 요구하였다. 연전노예사건 1차 조사에서 완도경찰서 경찰관과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조사하려 하였다.

##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발달장애인법 제13조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사찰노예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존재함에도 해당 사건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게 배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수사관교체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져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관할 검찰청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아닌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이 피해자 조사만이라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발달장애인전담검사 입회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 다.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장애인 노동 착취 범죄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률 위반에 그치지 않고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죄명은 다르지만 모든 피해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통합적인 관점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사무분장은 근로관계법률 위반은 노동청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일반범죄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력 착취 문제가 통상적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처리된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30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일괄적으로 3년 치의 임금을 계산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9)</sup>

9)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43면.

또한, 이런 사무분장은 노동력 착취 사건의 통합적 접근을 가로막는다. 노동청과 검찰청 공안부는 근로관계법률 위반에 대해서 판단하고, 형법상 범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일반 경찰이나 검찰 형사부에서 판단한다. 그 결과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연구 대상 사례에서 근로관계법률 위반은 노동청이 수사하였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염전노예사건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1차 조사에서는 불기소처분, 2차 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기소되었다.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고물상주인)에서는 노동력 착취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선 노예사건에서도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만 수사되었다.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횡령 사건에서는 노동력 착취가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처리되고 수급비 횡령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대구노동력 착취사건에서도 형법상 약취유인 등은 검토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노동력 착취와 성착취 피해를 함께 당했는데, 수사기관의 내부 사무분장 때문에 통합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서, 나머지 혐의는 경찰서에서 분절적으로 수사되었다.

## 라. 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판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장애인의 지적 능력 정도는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여 모두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피해자에게 그 판단을 할 지적 능력이 있는지는 쟁점이 된다. 또한,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쟁점이 된다. 장애인복지법위반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가해자의 고의를 판가름하는 데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그 지적 능력 때문에 고소 의사를 의심받기도 한다.

연구 대상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흑산도 노예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일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찰노예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2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가 스님으로 불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동을 울력이라 판단하였다.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고물상주인)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체불 임금에 관하여 법률대리인 없이 가해자와 한 합의는 그 의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반면, 피해자가 친형을 상대로 한 고소는 “내적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위 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달리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만 이용되었다. 원양어선 노예사건에서 검찰은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여 일반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였다.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회연령 8세의 지적장애인으로 가해자로부터 성착취를 당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등한 관계로 품앗이하였다는 가해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 마.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음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일하게 되는 이유는 달리 갈 곳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생활구조,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지식의 부족, 장애로 인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환경 자체에서 기인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소유물이나 머슴, 노예와 같은 지위에 놓이는 노동력 착취의 구조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가해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면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주인이 잘해 줬다”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10)</sup>

10) 이정민, 앞의 글, 44면.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주인이 잘해 줬다”와 같은 진술을 곧이곧대로 피해자가 자유 의사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의 본질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취약성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돌보았다”, “갈 곳 없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아팠을 때 치료해 주었다”라는 등 노동력 착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돌봄 제공이라 변명한다. 피해자 가족이 “먹여 주고 재워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에게 돌봄을 위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돌봄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제공한 이유는 피해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가해자의 유사 돌봄은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통로를 독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변명은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하여 철도를 건설한 것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구 대상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였다. 염전노예사건 1, 2차 조사에서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부모가 작성한 위임 각서를 바탕으로 한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잠실야구장 노예사건(가해자: 피해자 가족)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sup>11)</sup>는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대구노동력 착취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을 뿐 고용한 적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일을 못한다는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여 피해 범위를 축소하였다.

## 바. 유인자에 대한 수사 미진

여러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 피해자를 착취 현장으로 데려다 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피해자가 착취 현장으로 유입된 경위를 보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데려다 준 경우가 많다.<sup>11)</sup>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노동력

11) 이정민, 앞의 글, 43면.

착취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데려다 준 사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꺾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이때 유인자가 유인된 사람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인된 사람의 자유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리유인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 착취 현장에서 피해자가 구출된 후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데려다 준 사람에게도 영리유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착취 현장에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행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을 고소하거나, 직업소개업자를 특정하여 고소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 사례에서도 유인행위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흑산도 노예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돌아가며 피해자를 인도하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담당검사는 이를 노동력 착취 유인으로 보지 않고 불기소처분하였다. 후견인 노예사건에서도 후견인이 ‘용돈이나 좀 주면서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며 공장주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공장 청소, 집안 일 등을 시켰지만 유인죄 성립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노동력 착취사건에서 가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의 농사일 등을 돕도록 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지만, 가해자와 지인에 대한 영리유인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사. 소극적인 법 적용

### (1)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의 적극적 기소 필요성

검사는 범죄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5조),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검사가 법원에 대한 법령상 정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의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가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기소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복지법위반(강제근로)의 적용

2017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제59조의9 제2의2호에서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3호는 이를 처벌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에서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바꾸고,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은 유·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0.03.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 (3) 장애인복지법위반(방임)의 적용

피해자가 컨테이너, 창고, 폐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3호의 방임이 문제된다. 하지만 방임 역시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한 정도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간혹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하루 세 끼 밥을 주었다면, 피해자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행위자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고, 피해자의 몸 전체에서 오랜 노동의 흔적과 각종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미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2)</sup> 그렇기 때문에 학대사례 개입 초기에 현장사진 및 학대당한 피해자 신체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 이정민, 앞의 글, 44.

#### (4)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금지)의 적용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① 장애인을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③ 영리행위를 하였는지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 수사기관의 소극적 법적용

연구 대상 사례에서 검사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흑산도 노예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시 근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가 흑산도를 벗어나 목포 병원에 간 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 놓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강제근로)를 적용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의 부당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하였다. 후견인 노예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를 공장에 보냈는데, 피해자는 위생이 불량한 채로 단독 컨테이너에서 기거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월 1~2회 방문하였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후견인 도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한약을 지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방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였다.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 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부당한 영리행위 금지)를 명시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았다.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실체법적 문제점

- 가. 관련 규정 해석의 문제
- 나. 관련 규정 적용의 문제
- 다. 양형상 문제
- 라. 장애 인지(認知)적 관점의 부재
- 마. 장애인 대상범죄의 통계 부재

## 4.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실체법적 문제점

### 가. 관련 규정 해석의 문제

장애인학대 사건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 법적용 여부가 충실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학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범죄행위의 각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살펴본다.

#### (1) 강제 노동현장에 투입되기까지

##### (가) 약취·유인

약취나 유인 등의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영리의 목적이라면 형법 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말한다. 반드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취득한 이익이 반드시 영업적이거나 불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취·유인된 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할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sup>13)</sup>

노동력착취의 목적에서 착취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착취 목적을 뜻한다. 예컨대 수입의 50% 정도를 공제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기여분을 현저하게 불비례하게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①노예상태, ②노예상태와 유사한 예속상태, ③사실상 존재하는 또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노동력을 장기간에 걸쳐 착취하는 상태, ④불리한 노동관계에서 근로하는 상태 등 4가지 상태에 빠지게 할 목적이면 노동력착취가 인정된다고 한다.<sup>14)</sup>

판례는 약취, 유인, 매매의 3가지 개념표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즉, 약취·유인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하에 두었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다.<sup>15)</sup>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 성립

13) 김성돈, 『형법각론 제4판』, 2016, 156면

14) 김성돈, 앞의 책, 156면

15)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



을 배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약취·유인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약취·유인죄 성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sup>16)</sup> 실제 적용된 사례도 매우 드물다.<sup>17)</sup>

흑산도 노예사건에서도 검찰은 피해자가 흑산도를 벗어나 목포 병원에 자주 갔다는 병원 기록, 피해자가 자주 도망갔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 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거처가 피의자들의 집안 창고 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가 상시 근로 제공을 위한 대기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목포 병원에 가기 위해 배를 탈 때마다 피의자가 동행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판단에 심히 의문이 있다.

## (나) 인신매매

### 1)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도입

장애인 노동력착취 피해자가 유입된 경위를 보면 가족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대가해자에게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친권포기각서’를

---

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범인의 기망에 속아 간 것이고, 여관에 들어간 뒤에도 창녀로 취업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범인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아야 한다(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7노55 판결 확정).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영리 목적 약취죄의 인정 여부는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위와 같은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01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 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협박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6)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 11. 9., 69면;

17) 최민영,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3, 278면. 엄전노예 사건 중에서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영리유인죄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15 판결 등).

작성해주거나, “먹여주고 재워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넘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인계된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넘긴 부모(그 밖의 보호자)는 피해자를 행위자에게 ‘위탁’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버렸다가(유기), 매매(인신매매)하였다는 인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행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은 부탁을 받아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을 거둔 것이고,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했으니 선한 일을 하였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다.<sup>18)</sup>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sup>19)</sup>를 비준하였다.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 ② 취약한 지위의 남용 등 수단 ③ 이동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얻은 동의는 자발적인 동의로 보지 않는다. 결국,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거나 피해자를 돌보는 위치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래 생활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 피해자를 인수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련의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20)</sup>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위하여 2013년 4월 「형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제289조), 추행·간음·결혼·영리·국외이송 목적 외에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의 죄를 추가하였다(제288조). 그리고 약취·유인·인신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92조). 이렇게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에 대한 상해 등은 제290조부터 제291조까지에 따라 별도로 처벌된다.

18)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43쪽 이하

19) 정식명칭은「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다.

20) 김종철,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vol.444, 2014년 9월, 44면

## 2) 입법의 문제점

그러나 실제 장애인노동력착취로 유입된 사례를 보면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는 등의 매매라고 할 만한 행위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폭행·협박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한 경우는 물론, 피유인자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현혹시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유인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히 무시되어 아예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거나 지적장애로 인한 의사결정과 생활에 있어서의 취약성,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의 권력 관계로 인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위협이나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또한 피해자를 행위자에게 인계한 행위가 약취, 유인, 매매 등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 피해자를 인수한 행위자 역시 「형법」 제29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sup>21)</sup>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sup>22)</sup>

- ① 인신매매의 정의 없음: 문언주의에 따라 강제력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가 관계가 핵심인데<sup>23)</sup>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가 없다.
- ② 수단과 행위유형의 부족: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위협이나 무력,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취약성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인수” 하는 것을 인신매매의 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도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 범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된 규정에서는 인신매매의 성립과 피해자 동意的의 무관성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 유엔 인신매매의정서상으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인신매매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의 인신매매에 진심으

21)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45쪽 이하. 김종철, 앞의 글, 48면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이 강제 노동 등 의도한 착취에 대해 형식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기망이나 취약한 지위의 남용 등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를 경우 그러한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형식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역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22) 최민영, 앞의 책, 280면

23) 김종철, 앞의 책, 46면 이하

로 동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인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미성년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 불법적인 목적 하에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인수인계 행위는 불법적 목적이 있기만 하면, 특정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가 성립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⑤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요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동일하게 요구하여 실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포섭하여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인신매매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양한 지배적 관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sup>24)</sup>

따라서 장애인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넘기고 노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한을 그 타인에게 주어 주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보아야 한다. 매도인은 매매의 대가를 직접 받는 대신 가족 내지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더는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고, 노동력 착취의 행위자는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위임된 1명의 노동력을 매수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의 금지행위 중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주거를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 (다)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버린 때에 유기죄가 성립한다.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한 때에 인정된다. 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 장애인에게 보호·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호의무자가 장애인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인도한 행위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에 따른 '유기'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지는 검토할 수 있으나, 피해자를 행위자에게 인도하는 자가 피해자를 위탁한다는 인식을 갖고 행위자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이를 유기

24) 소라미, 앞의 책, 76면

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형법의 유기죄 판단에 있어 법원은 유기행위를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덤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행위자에게서 벗어난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피해자를 행위자에게 인도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적극적 처벌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 (라) 그 밖의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으로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염전노예 사건 중에는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일명 휘빠리로부터 피해 장애인을 인도 받은 후 여관에서 염전 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염전주에게 소개비를 받고 염전 인부로 넘긴 행위에 대해 영리유인죄와 함께 직업안정법위반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15 판결 등).

약취·유인, 유기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정신적 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제17조, 제7조).

## (2) 강제로 일을 시킨 행위

### (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약취·유인하여 일을 시키거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일을 시킨 경우에는 일을 시킨 행위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제107조, 제7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였다면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과 후술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노동금지 규정을 형법상 강요죄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강제노동금지

규정은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

#### (나) 장애인복지법 강제노동금지

강제근로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의2호에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2017. 2. 8. 신설되었다.<sup>25)</sup>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비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바꾼 외에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명백히 폭행·협박·감금을 당한 경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실제로는 혼자 외부로 나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은 유·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나 감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폭행·협박·감금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이 강요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한다. 이때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폭행·협박·감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사례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① 다른 갈 곳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 ② 행위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생활구조, ③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지식의 부족, ④ 장애로 인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환경 자체에서 기인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소유물이나 머슴, 노예와 같은 지위에 놓이는

25)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노동력 착취의 구조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가해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면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주인이 잘 해 줬다”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냥 일을 하라니까 했다”는 정도의 진술로 근로의 제공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극히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 감금이 없는 이상 장애인복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

#### (다) 장애인복지법상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때에 방임죄가 성립한다. 방임죄 또한 보호의무를 지는 자가 보호·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의식적으로 방치하고 보호를 소홀히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인정된다. 피해자가 컨테이너, 창고, 폐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3호의 방임이 문제된다. 하지만 방임 역시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한 정도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간혹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하루 세 끼 밥을 주었다면, 피해자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행위자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고, 피해자의 몸 전체에서 오랜 노동의 흔적과 각종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현저하여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될 수준이 아닌 이상 방임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 (3) 금전적 착취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문제된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착취하였다면 준사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것에 대하여 체불임금

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범위반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26)</sup>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관련 규정 적용의 문제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10건의 사례 중 6건은 검사가 불기소하였고(흑산도, 야구장 형, 후견인 노예, 모녀, 대구노동력 착취, 곡성 품앗이), 2건은 불구속기소를 하였으며(사찰, 야구장 업주), 1건은 구속기소(염전노예)를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률규정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1) 일관성 없는 법률 적용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sup>27)</sup> 잠실야구장 사건에서 고물상 업주에 대하여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이 적용되었고, 사찰사건에서는 당초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뒤늦게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염전노예사건에서는, 내사 종결될 뻔하였다가 장애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만을 적용하였다가 추가 수사를 통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강제근로금지), 폭행죄 등이 적용되었다.

연구대상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장애와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유사한 사건들이지만, 임금체불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준사기나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관련 규정의

26) “염전노예”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염주측이 유효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장애인과 염주 사이에 근로계약 등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염주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0610 손해배상(기) 등](최정규외7, 위 보고서, 27쪽).

27) 최정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의 문제점”,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2019, 50쪽



적용은 형법상 죄수론과 경합론의 문제와 연결된다. 형법 제40조와 제37조에 비추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 개의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행위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면 상상적 경합을, 수 개의 행위로 행해진 것이라면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sup>28)</sup> 하지만 수사기관에 따라 위 범죄 중 일부만 검토되고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 (2) 장애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법률 적용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개별적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흑산도 노예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경미하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결정능력이나 경제관념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를 셈하거나 시간을 계산하거나, 계획적인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점에 중점을 둔 수사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구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상습 협박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범죄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간은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한정된 기간만이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472 판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숫자나 날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비장애인인 피해자인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29)</sup>

## (3) 관련 법률 규정의 단편적 적용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장애인이 노동현장에 유입되기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 등 다양한 국면에서 여러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제근로, 장애인학대 등의 여러 범죄로 이루어진 노동력 착취 사건으로 보아야 면밀한 수사과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하나의 노동력 착취 사건으로

28)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2009, 691쪽

29) 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장애정도과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 54 판결)

보지 않고 임금 미지급 부분, 노동력 착취 과정에서 가해진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을 떼어내어 단편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였다.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폭행죄 등 일부 규정만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폭행이 수반된 인신매매나 강제근로, 장애인학대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sup>30)</sup>

곡성 품앗이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관할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 미지급에 한정하여 수사를 하였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노동청의 조사가 체불임금 부분에 국한됨에도, 검사가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처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염전노예 사건에서는 동일한 피해사실을 두고 내사종결, 약식기소, 구속기소 등 3차례의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2차 조사 시 노동력 착취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만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3차 수사 결과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 잠실야구장 사건에서도 임금체불로만 보아 업주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부과하였는데, 노동력 착취에 수반된 금전 착취도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장애 관련 범죄의 소극적 적용

수사기관은 장애 관련 범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 장애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형법 등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그 인정 여부가 처단형 내지 선고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형법상 준사기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각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형량의 부족함은 어느 정도 보완·개선되고 있으며, 장애 관련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혹은 여론의 법감정에 호소하고, 당해 범죄사실의 부정적인 죄질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법령의 위반 사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sup>31)</sup>

30) 사찰노예사건(서울북부지검 2020형제5764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설령 노동강요의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이 미치고, 노동 강요금지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규정이 2017. 2. 8. 신설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31) 최정규 외 7,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

흑산도 노예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140만 원에 팔려와 약 1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음에도 노동력 착취유인, 준사기 등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금전적 착취에 대해 단순 임금체불 관련 법령을 적용

검찰은 임금미지급 행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준사기로 기소하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32)</sup>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고(제32조 제4항), 악의적인 차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사찰노예사건에서 담당검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쓸기 등 각종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승려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괴롭힘 등의 금지)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 (6) 유기죄나 방임죄의 소극적 적용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59조의9 제2호, 제3

과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39면

32) “염전노예”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염주측이 유효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장애인과 염주 사이에 근로계약 등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염주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0610 손해배상(기) 등](최정규 외 7, 위 보고서, 27쪽).

호).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방임죄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다.

피해자가 컨테이너, 창고, 폐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3호의 방임이 문제된다. 하지만 방임 역시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한 정도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간혹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하루 세 끼 밥을 주었다면, 피해자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행위자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고, 피해자의 몸 전체에서 오랜 노동의 흔적과 각종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현저하여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될 수준이 아닌 이상 방임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포항 후견인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공장근무시 제대로 된 숙식공간이 아닌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냈음에도 후견인인 피의자가 월 1~2회 방문하여 얼굴만 보고 돌아간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후견인의 도움으로 치과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한약을 지어주기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방임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다.

가족이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맡기면서 위임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1차와 2차 수사에서는 가족의 위임각서를 근거로 가해자를 불기소하거나(1차), 약식명령만을 하였다(2차).

## 다. 양형상 문제

연구대상사례 10건 중 기소된 사건은 3건이고, 그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11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추가수사를 통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금지), 폭행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2심에서는 일부 피해변제를 이유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다. 야구장 노예 사건의 경우 업주에 대하여 임금미지급과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는데, 임금미지급 부분은 벌금 100만 원, 장애인복지법위반등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몇 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의 양형의 부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음에도 불기소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다.<sup>33)</sup>

우선 법정형 자체가 높지 않고, 권고형도 매우 낮게 정해져 있다.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기본 2월~1년, 가중하더라도 6월~1년 6월에 불과하다. 부당영리행위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역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낮다.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의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 1년 6월~3년 6월, 감경 1년~2년 6월, 가중 3년~6년이다.

반면에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기본형이 6월~1년(3,000만 원 미만)부터 5년~9년(50억 원 이상)까지 구분되어 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기본형이 6월~1년 6월(1억 원 미만)부터 6년~10년(300억 원 이상)까지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노동 기간이 1년이든, 40년이든

33) 최정규 외 7,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24면 “본 연구의 대상인 39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33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쳤고, 이중 7명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각장애 1급에 지적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6년 11개월 동안 감금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가해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명의 지적장애인들을 각 6년 10개월, 2년 6개월 동안 붙잡아 놓고 강제로 일을 시킨 자 역시, 다른 많은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를 14년 1개월 동안 감금하여 영리유인죄, 감금죄, 근로자에 대한 폭행죄, 준사기죄 등으로 모두 기소되었음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자도 있었다. 가해자의 아버지 때로부터 21년 동안 대를 이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인간이 21년 동안 감금되어 강제노동에 혹사당하였음에도 가해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이다.”

구분 없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법정형 안에서 가중으로 하더라도 3년~6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선고형이 낮게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sup>34)</sup>

다른 염전노예사건에서 1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영리유인죄에 대한 양형권고(기본 징역 1년~3년)를 고려하였다. 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2명의 피고인 중 1명에게는 징역 3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그리고 위 피고인들에게 4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동력 착취를 학대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법상 약취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선고형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법정형이 낮고 양형기준이 일률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이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피해자를 오랫동안 보살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은 노동력 착취 사건을 체불임금의 문제로 보면서 3년치 임금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잠실야구장 사건에서는 임금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한 점을 고려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가 감형의 사유로 고려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라. 장애 인지(認知)적 관점의 부재

검찰은 사찰 노예사건에서 “올력”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는 “품앗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잠실야구장 사건에서는 친형의 경제적 착취에 대해 피해자를 오랫동안 보살핀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잠실야구장 사건에서 친형에 대한 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업주와의 관계에서는 피해 장애인이 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대구 노동력 착취 사건, 모녀 노동착취 및 수급비 횡령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에서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34) 2019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총 94건인데, 그중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35건으로 37.2%에 해당했다(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157쪽).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후견인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장애인지적 관점은 장애인의 이해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사건이 장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sup>35)</sup>

올력이나 품앗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이나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없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장애인의 노동력 제공을 평가 절하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가해자가 장애인을 오랫동안 돌봐주었다는 점이 불기소나 감형 사유로 고려되는 것은 장애인을 돌봄의 객체, 비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한 가해자를 돌봄의 주체로서 보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 수사기관이 장애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피해 장애인이 가진 장애의 특성,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취약성을 고려하면서 사건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 마. 장애인 대상범죄의 통계 부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대상 범죄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 통계가 없다.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지만, 위 보고서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통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찰청의 발생통계원표에는 가해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가해자의 정신이상유무나 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피해자의 경우는 이러한 정보조차 수집되지 않고 있다.

35)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은 비교적 익숙한 용어이다. 송인자,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에 따르면,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http://old.kigepe.or.kr/Inc/FileDownload.asp?Board\\_CD=20&seq=55](http://old.kigepe.or.kr/Inc/FileDownload.asp?Board_CD=20&seq=55) (2020. 9. 7. 열람)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제인권 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 가. 유엔
- 나. 유럽인권법원
- 다. 미국
- 라. 영국
- 마. 유럽 국가별 판례

## 5. 국제인권 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국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들은 수사과정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 처벌, 예방 및 재발 방지의 측면에서 기존 제도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일찍이 노동착취와 관련된 여러 국제협약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세계노예 지표(Global Slavery Index)를 제작하는 등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규범, 유럽인권협약 등을 살펴보고, 유럽, 미국, 영국 등의 (장애인)노동착취 관련 법률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유엔

#### (1) 개요

##### (가) 일할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

일할 권리(right to work)는 기본적 인권이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제23조 제1항),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제23조 제2항).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권리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등 국제권리장전과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에서 다루고 있다.<sup>36)</sup>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36) 각 협약별 노동에 관한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사회권규약 제6, 7, 8조,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 (i)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1(a)항, 아동권리협약 제32조, 이주노동자협약 제11, 25, 26, 40, 52, 54조 등이 있다.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포함한 주요 노동 관련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노동과 관련된 의제의 기준을 제시한다.<sup>37)</sup>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제29호 강제노동 협약(1930년)은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노동이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강요한 노동 또는 봉사”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 (나) 장애인의 노동권에 관한 국제규범

앞서 살펴본 노동 관련 국제규범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이나, 노동 분야는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5호 및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sup>39)</sup> 등은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이란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37) A/HRC/22/25, para. 6.

38)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은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제29호 협약에 미가입하였으나 지난 2020. 7. 7. 국무회의에서 위 제29호 협약을 포함한 3개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9)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항은 협약 당사국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할 의무를 강조하며, 당사국이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경우를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경우로는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과 고충처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 보호, 노동조합권 보장, 직업 훈련에의 효과적 접근, 고용기회와 승진의 촉진, 창업의 기회 촉진,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작업장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 장애인의 근로경력 습득 촉진, 그리고 직업적 재활 프로그램 촉진 등이 규정되어 있다.

## (2) 장애인 노동착취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가) 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노동착취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2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노예제 및 강제노동에 대해 예외 없이 금지를 명시한 자유권규약 제8조<sup>40)</sup>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sup>41)</sup>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주석서(Commentary)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노예 상태에 빠지거나 가혹적인 상황에서

#### 40) 자유권규약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41) Bantekas, I., Pennilas, F., Trömel, S. (2018).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In I. Bantekas, D. Anastasiou, M. Stein (Ed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mentary* (pp. 497-5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507

노동을 수행할 것을 강요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위 조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일반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42)</sup>

또한 유엔의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2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관한 주제 연구보고서에서 “장애인,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거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착취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sup>43)</sup> 나아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장애인을 착취와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이 이를 예방하고 장애인 노동착취 및 강제노동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할 의무를 구성하는바,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강제노동의 금지에 대해 일반 대중 및 민간 부문에 알리고 그러한 범죄를 인지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4)</sup>

더불어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5호는 강제노동에 이르는 시설에서의 “의학적 치료(therapeutical treatment)”도 규약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유권규약의 강제노동금지조항과의 잠재적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sup>45)</sup>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수준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우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며, 당사국에 장애를 구실로 노동력 보호기준을 낮추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sup>46)</sup>

#### (나)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장애인노동착취 관련 결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 출신의 18인의 개인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sup>47)</sup>는 ‘개인통보절차(Individual Communications)’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통보절차’란 국제

42) Bantekas, I., Pennilas, F., Trömel, S. (2018).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In I. Bantekas, D. Anastasiou, M. Stein (Ed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mentary* (pp. 497-5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507

43) A/HRC/22/25, para. 52.

44) A/HRC/22/25, para. 53.

45) UN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5호(1994), para. 21.

46) UN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5호(1994), para. 25.

47)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총 182개 당사국으로부터 장애인권리

인권조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개인이 당사국에 의하여 자신의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해당규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규약위원회가 그 사건을 심사하여 관련 당사국 및 통보자에게 그 견해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협약 당사국의 개인이 위 개인통보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해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비준하여야 하는데,<sup>48)</sup>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총 182개국이며, 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은 총 96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 이슈에 대해 보고 및 권고하는 독립된 개인전문가 또는 실무그룹으로, 총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있다. 주제별 특별절차 중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장애 특별보고관')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이 있다. 특별절차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비슷하게 개인통보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세부 내용은 각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특별보고관 등은 접수한 개인통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에 질의 등을 발송하고,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 내용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위 특별보고관들은 노동착취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검토 기준으로 1926년 노예협약, 세계인권선언, ILO 제29호 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및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sup>49)</sup>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과 인신매매에 관한 권고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하 '인신매매 가이드라인')<sup>50)</sup> 등을 제시하였다.<sup>51)</sup> 위 국제인권규범들을 구체

협약의 각 조항 해석에 대한 최고 권위기관으로 인정받는 국제인권조약기구로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항 해석과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4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

49)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alermo Protocol)

50)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51) AL KGZ 3/2018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24272>) 부속서(Annex) 참조

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계인권선언 제4조와 자유권규약 제8조에서 노예제의 완전한 금지를 규정한다.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어떠한 형태에 의하더라도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노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인신매매 등 노동착취 근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예협약 제5조는 "당사국에 강요 또는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팔레르모 의정서 제6조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신매매 가이드라인 제13원칙은 "국가는 행위자가 정부주체인지 비정부주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와 관련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사, 기소 및 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소결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강제노동 등 노동착취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ILO 협약,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및 팔레르모 의정서 등 다수의 국제인권규범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근절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를 금지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중 및 민간부분에 이를 알리고 교육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팔레르모 의정서와 유엔 인신매매 가이드라인 등은 인신매매 사안에 관한 국가의 수사, 기소 및 재판할 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는 용납될 수 없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3) 합의점

일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며,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노동착취 방지를 위해 특별히 조항을 규정해두는 등 노동 환경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비장애인 노동자보다 더욱 착취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의 문제는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및 장애인권 등의 관점에서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 및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처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울력”이나 “폼앗이”라는 등을 구실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고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가해자 처벌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 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1) 개요

#### (가)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의 역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1953년 9월부터 발효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유럽인권법원은 비상설 기관으로 시작되었으나 1998년 상설기관이 된 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가가 다른 회원국가의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는 국가소원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제기하는 개인소원이다. 단, 개인은 본국에서 사법적인 구제절차 등을 모두 소진한 후에 유럽인권법원에 개인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나) 유럽인권협약 제4조

##### 1) 유럽인권협약 제4조의 구조

유럽인권협약 제4조는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를 규정한다.<sup>52)</sup>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1항은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에 놓이지 아니함을 규정하여, 인간에 대한 노예 또는 예속을

52) 제4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 b. 군사적 성격의 의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의무.
  -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금지한다.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2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금지한다.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3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제4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 2) 유럽인권협약 제4조의 내용

유럽인권협약 제4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은 노예(Slaver), 예속(Servitude),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이다.

### 가) 노예 또는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lavery or Servitude)

제4조의 노예(Slavery)가 지칭하는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6년 노예협약에서 정의된 노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26년 노예협약에서는 노예를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사람의 소유로 취급되는 사람의 지위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조의 예속(Servitude)이란 '강제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속해 살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인력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예속의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예속(Servitude)과 후술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구별함에 있어서 유럽인권법원은 피해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데, 피해자가 예속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예속에 해당한다.

### 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제4조 제2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금지하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법원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해서 다루는 ILO 제29호 협약을 통해서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초석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해질 불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제4조 제3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르면, (a) 유럽인권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군사적 성격의 역무나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c)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역무,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의 경우에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4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고 동시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해질 불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노동은 제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유럽인권협약 제4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

#### 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할 의무

유럽인권협약 제4조는 협약 가입국들이 사람을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종속 시키고자 하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입국들이 적절한 입법과 행정제도를 통해서 위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 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협약 가입국들이 협약 제4조 위반에 따른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피해자들의 치료를 돕는 운영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유럽인권협약 제4조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도출될 여지가 있다. 당사국이 협약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특정 개인이 처할만한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위의 위협에 처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협약 제4조에 위반된다.

#### 다)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

유럽인권협약 제4조는 해당 조항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 부여한다. 유럽인권법원에 따르면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는 당국이 해당 문제를 인식한 경우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고소 등에 좌우되지 말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인권법원은 이러한 조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사일 것, ②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식별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조사일 것, ③ 모든 경우에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위험에 처한 개인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 ④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척은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2) 판례

### (가) 실리아딘 대 프랑스 (SILLIADIN v. FRANCE)<sup>53)</sup> 사건

#### 1) 사건 개요

실리아딘은 1978년생으로 파리에 거주중이며 1994년 1월 26일 15세의 나이로 프랑스에 입국했다. 본래는 토고 출신이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진 D부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민절차와 다닐 학교를 알아 봐주기로 하였으나, 실리아딘은 여권을 D부인에게 빼앗긴 채 무급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1994년 하반기에는 D부인이 실리아딘을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B씨 부부에게 말 그대로 “빌려주어” 당시 임신을 하고 있던 B씨 부인을 돕게 했다. 실리아딘의 일과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되어 아침준비, 아이들 옷 입히기, 학교에 바래다주기, 갓난아이 돌보기, 빨래, 다림질, 저녁준비, 아이들 돌보기, 설거지 등을 하다가 밤 10시 30분에 마감되었다. 실리아딘은 밤 새 아기를 돌보면서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야 했고,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다. 실리아딘은 B씨 부부의 집에서 휴식일 없이 주 7일을 근무하고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만 일요일에 미사를 보러 밖에 나갈 수 있었다. 이후 실리아딘의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B씨 부부에게는 실리아딘의 취약한 신분상 어려움을 빌미로 무급노동을 제공받고 실리아딘을 비인간적인 노동 및 주거조건에 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파리법원은 1999년 6월 10일 B씨 부부에게 각 12개월의 징역, 100,000 프랑스프랑의 벌금, 실리아딘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100,000 프랑스프랑을 선고했다. 이후 B씨 부부가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실리아딘이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했으나, 노동이나 주거 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0년 10월 19일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피고측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을 고려한 판결을 2001년 12월 11일 선고하였다.

53)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ECHR 2005-VII.

## 2) 판단

실리아딘은 유럽인권법원에 프랑스 형법이 그녀에게 예속 또는 적어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유럽인권협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소원을 제기하였다. 실리아딘측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를 근거로 그녀가 강요 받았던 ‘예속’ 또는 적어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대해서 프랑스의 형법이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프랑스정부가 피해자에게 26,209,69 유로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유럽인권법원이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4조와 관련하여 판단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적용가능성

국가가 직접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제4조를 적용한다면 제4조를 통한 인권보호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법원은 국가들에게 제4조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처벌할 의무가 협약 제4조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 국가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4조가 적용됨을 밝혔다.

### 나) 유럽인권협약 제4조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 실리아딘의 상황이 제4조에서 금지하는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 ① 노예(Slavery)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1항의 노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1926년 노예협약을 참고하여 노예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을 의미함을 확인했다. 유럽인권법원은 B씨 부부가 실리아딘에 대해서 법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노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② 예속(Servitude)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럽인권법원은 예속이란 개념이 ‘강제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예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실리아딘의 경우가 유럽인권협약 제4조의 예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③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and Compulsory Labour)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2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인지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폈다. 그에 따르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해질 불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모든 노동'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실리아딘에게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였으므로 실리아딘의 경우가 유럽인권협약 제4조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여부

실리아딘이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의 해당 법률과 그 적용이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대한 심각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럽인권법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먼저,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형법 225-13과 225-14가 유럽인권협약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노예와 예속이 프랑스형법 하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형법 하에서 가해자들이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형법과 그 적용이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므로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41조에 근거하여 프랑스 정부가 피해자에게 26,209,69 유로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나) C.N. 대 영국 (C.N. v. THE UNITED KINGDOM)<sup>54)</sup> 사건

##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79년 출생으로 우간다를 떠나 2002년 9월 2일 영국에 도착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S라는 친척이 허위 여권과 비자취득을 도와주었으나 영국에 도착했을 때 S가 여권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2003년 1월 S는 간병인업체 M에게 청구인을 소개했고 청구인은 간병인으로 일했다. 2003년 초부터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K부인의 입주간병인으로 밤낮없이 일했다. 한 달에 한 번 몇 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거나, K부인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는 M이 청구인을 태우러 와서 S의 집에 데려갔고 그 집을 떠날 수 없도록 통제를 받았다. 2006년 8월 18일

54) C.N. v. the United Kingdom, no. 4239/08, 13 November 2012.

청구인은 S의 집을 떠나 지역은행으로 가서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청구인은 당국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망명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2007년 4월 청구인의 변호사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인신매매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2008년 12월 5일 청구인의 변호사는 노예제와 강제노동을 포함한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청구인의 사건이 영국법률에 의할 때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신매매가 아닌 국내에서의 '예속'만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음을 통보했다.

## 2) 판단

청구인은 영국에서 예속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받지 못하자 영국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을 근거로 유럽인권법원에 개인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영국정부에게 비금전적 손해로 8,000 유로,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로 20,000 유로를 청구인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유럽인권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4조와 관련하여 판단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조사의무 발생여부

유럽인권법원은 협약 당사국에 조사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가사 노역을 했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인권법원은 영국 정부가 청구인이 은행에서 경찰을 부른 날부터 청구인의 예속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망명신청, 청구인 변호사의 조사요청, 조사과정 등을 통해서 청구인이 예속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영국정부는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나)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여부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청구인이 충분한 조사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협약 제4조로부터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노예, 예속, 강제 노동의 특정 측면을 범죄화하여 인신매매, 허위 구금, 납치, 상해, 폭행, 구타, 협박, 괴롭힘 등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음을 주장했다.

유럽인권법원은 실리아딘 대 프랑스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행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유럽인

권협약 제4조 위반의 피해자는 이를 범죄로써 처벌하는 법률 없이는 조사나 처벌 등의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예속'이란 인신매매 및 착취와 다른 특정 범죄이며, 명백한 형태와 명백하지 않은 형태의 강압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려면 개인이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는 여러 미묘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예속만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예속을 범죄로 처벌하는 특정 법률이 없었기에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C.N. 과 V. 대 프랑스 (C.N. and V. v. FRANCE)<sup>55)</sup> 사건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1978년과 1984년에 부룬디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민이며 자매이다. 브룬디의 내전을 피해 청구인 1(C.N.)은 1994년 16세의 나이로, 청구인 2(V.)는 1995년 10세의 나이로 이모인 M부인의 도움으로 프랑스에 도착했다. 청구인들은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 대가나 휴일 없이 M부인 가족의 집안일, 가사일 등을 했고 특히 청구인 1은 장애가 있는 M부인의 아들을 돌보고 원예일도 담당했다. 청구인 1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일만 했으나 청구인 2는 1995년 5월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고 1997년부터는 중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 2는 학교버스 요금, 급식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지하실에서 살았다. 또한 M부인 가족이 쓰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비위생적인 임시변기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대체로 파스타, 쌀, 감자만을 먹었다.

1995년 12월 19일 경찰 아동 보호국에서 청구인들이 아동착취에 처하였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M부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99년에 다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M부부는 프랑스 형법 225-14조, 225-15조에 해당하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M부인은 청구인들에게 부룬디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는데, 청구인 1은 부룬디로 돌려보내겠다는 위협을 죽음 또는 여동생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청구인 2는 부룬디로 돌아가는 것이 프랑스에서 학대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느꼈다는

55) C.N. and V. v. France, no. 67724/09, 11 October 2012.

점이 심리검사에서 밝혀졌다.

낭트 형사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부인의 남편인 M에게 12개월 징역형 및 벌금 10,000유로를, M부인에게 15개월 징역형 및 벌금 10,000유로를, 그리고 M부부가 청구인 1에게 손해배상금 24,000유로를 지불하고 청구인 2에게는 (청구인 2가 요청한대로) 상징적인 의미의 유로화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M부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2000년 6월 29일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2009년 7월 3일 청구인들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파기법원의 형사부는 2010년 6월 23일 해당 항소를 각하했다.

## 2) 판단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정부가 30,000유로를 청구인 1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 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and Compulsory Labour)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럽인권법원은 청구인 1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모든 가사일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M부인의 장애아들을 돌보아야 했다는 점, 주 7일 휴가 없이 일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한 점, 여가시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인 2는 상대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숙제를 할 시간도 주어졌다는 점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나) 예속(Servitude)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럽인권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속이란 ① 특히 심각한 형태로 자유를 부정당하는 것이고, ② 강제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③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속해 살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인력 등을 제공하고 ④ 그러한 예속의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유럽인권법원은 청구인 1이 자신의 프랑스에서의 신분, 행정적 상황들이 M부부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고, 교육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채 휴가나 여가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전혀 품지 못한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영구적이고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다는 점을 근거로 예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인 2의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다닐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보건 선생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예속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과 예속의 구별기준

유럽인권법원은 예속이 특별한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속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구별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해당 상황이 영구적이고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가해자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인지를 불문한다고 보았다.

#### 라)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할 의무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여부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종속시키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입법 및 행정제도를 적절히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리아딘 대 프랑스 사건에서 문제 되었던 프랑스 형법 225-13, 225-14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부족하며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 마련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마)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 위반여부

유럽인권법원은 협약당사국이 조사를 취할 결과적 의무가 아닌 '절차적' 의무가 있으며 해당 조사는 독립적이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1995년에 이루어진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태만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들이 조사에서 1995년의 상황은 아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 1999년의 조사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황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이후 조사를 토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협약 당사국인 프랑스가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 함의점

유럽인권협약 제4조는 노동력 착취와 관련 개념을 ① 노예, ② 예속, ③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유럽인권법원은 해석을 통해서 위의 각 개념들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4조를 통해서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일정한 의무들, 즉 ①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할 의무, ②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③ 조사를 취할 절차적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먼저 해당 국가 내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유럽인권법원은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위 의무들 위반까지도 살펴 국가의 협약준수의무 등을 강제한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개념과 정의도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된 국가의 의무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노동력착취 관련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가 용이하게 발생 및 재발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도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력 착취 관련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며, 피해가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무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 미국

### (1) 개요

#### (가) 개념 및 대응체계

개념적으로 학대(abuse), 노동 착취(labor exploitation), 노동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 현대 노예(modern slavery)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제도에 기반하여 이를 대체적으로 구분해보면 학대는 폭력, 인권침해, 가혹 행위 등을 포괄하는 보호와 권리옹호(Protection & Advocacy), 인권 관점의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노동 착취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 노동 인신매매는 무력, 사기, 강압 등을 수단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하거나 비자발적 노동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sup>56)</sup> 미 국무부

는 현대 노예란 인신매매와 같은 말로 성매매와 강제 노동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sup>57)</sup> 후술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도 현대 노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노동 학대(labor abuse)’라는 용어는 임시직 근로자나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들이 사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sup>58)</sup> 등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노동 착취라는 표현과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앞서 언급한 모든 용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여하는 기관 역시 달랐거나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학대 문제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노동부, 법무부, 고용평등위원회(EEOC) 등에서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 인신매매인 경우에는 미국 연방 수사국(FBI),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태스크포스,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1-888-373-7888) 등이 작동하게 된다.

#### (나) 관련연방법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연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혐오 범죄방지법(Hate Crimes Prevention Act)이 바로 그것이다.

##### 1) 공정근로기준법

공정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며 29 U.S.C. 8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최저임금과 초과 근로 수당, 청소년 고용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임원이나 관리자, 전문직 등은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로 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주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공정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56) 미국의 전국 장애인 권리 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NDRN) 법률서비스국 부국장 데이비드 허트(David T. Hutt)는 2020.7.14 미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연구진과의 간담회에서 NDRN에서도 과거 인신매매나 노동 착취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국내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문제는 주로 학대로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다.

57) <https://www.state.gov/what-is-modern-slavery/> (2020. 8. 4. 확인)

58) 이와 관련해서는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 MSPA)이라는 별도의 연방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 WHD)에서 인증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금(예를 들어 50%나 60%)만을 지급할 수 있다.<sup>59)</sup> 2020년 현재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이다.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및 시간 부서의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각 위반 별로 \$1,000 미만의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y)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005년 인신매매 의정서의 비준에 앞서 2000년에 제정되었다. 특별히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은 아니며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이라는 소위 3P(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만들어졌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2 U.S.C. 78장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 7101.부터 § 7114.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의 설치, 인신매매 모니터링과 조사, 인신매매 핫라인 구축, 인신매매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 제공 등 내국인 및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 7102. (8)에 규정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란 (A) 폭력(force), 사기(fraud), 강압(coercion)을 수단으로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성 인신매매(sex trafficking)’와 (B) 비자발적 노역(involuntary servitude), 부채노예(peonage), 부채속박(debt bondage), 노예(slavery)를 목적으로 폭력, 사기, 강압을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recruitment), 은닉(harboring), 이송(transportation), 공급(provision)하거나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처벌에 관한 사항은 18 U.S.C 1부-범죄 제77장 ‘부채노예, 노예, 인신매매’에 규정되

59) 29 U.S.C. 5장 525부. 다만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 13658(Executive Order 13658) "연방 계약 업체의 최저임금 설정(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 정부와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행정명령상의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행정명령에 따른 최저임금은 2020년 현재 시간당 \$10.80이다.

어 있다. 이 중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관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폭력의 위협, 신체 구속이나 신체 구속의 위협, 심각한 피해<sup>60)</sup>나 심각한 피해 위협, 법률 또는 법적 절차의 남용이나 남용 위협<sup>61)</sup>, 피해자가 그러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심각한 해를 입거나 신체적 구속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하는 음모 (scheme), 계획(plan), 패턴(pattern) 중 하나를 수단으로 고의로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벌금형이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sup>62)</sup>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납치, 납치 미수, 중대한 성적 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살인 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 관여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하거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획득(obtain)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1593. (d)와 동일하여 납치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sup>63)</sup>

한편 법원은 형사 처벌이나 민사 배상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강제 배상(mandatory restitution)을 명할 수 있다.<sup>64)</sup> 이때 피해자의 전체 손실에는 피해자의 서비스나 노동으로 인해 가해자가 얻은 총소득이나 가치 혹은 공정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에 따라 보장된 피해자의 노동의 가치 중 더 큰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하려고 하였거나 범행의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주법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sup>65)</sup>

60) 18 U.S.C § 1589. (c) (2) “심각한 피해”란 모든 주변 상황 하에서 동일한 배경이나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계속 수행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히 심각한 심리적, 재정적, 평판의 피해를 포함하는 신체적이거나 비신체적인 모든 피해를 의미한다.

61) 18 U.S.C § 1589. (c) (1) “법률 혹은 법적 절차의 남용 혹은 위협적 남용”이란 행정, 민사, 형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식이나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법적 절차를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62) 18 U.S.C. § 1589.

63) 18 U.S.C. § 1590.

64) 18 U.S.C. § 1593.

65) 18 U.S.C. § 1594.

### 3) 미국 장애인법<sup>66)</sup>

미국 장애인법은 42 U.S.C. 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 대중교통 이용,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1990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 Act, ADAAA)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노동력 착취는 고용상의 차별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관련되는 내용은 126장 중 ‘고용(employment)’<sup>67)</sup> 부분이며 § 12111.부터§ 12117.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상 차별에 관해서는 미국 장애인법 외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 28 U.S.C.)에 관련 내용이 있고,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시민권법(Civil Right Act)도 고용상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은 주 정부와 직원이 15명 이상인 사용자 등에게 적용되며 재활법은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10,000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제 절차는 42 U.S.C 6 하위 장(subchapter) ‘동등한 고용 기회’ (§ 2000e ~ 2000e-17)에 규정되어 있다.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있으며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에서는 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협의·조정·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도 차별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나 주별로 설치된 별도의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 법원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거나 복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적극적 구제조치(Affirmative Action)나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lief)가 가능하다.

### 4) 혐오범죄 방지법

혐오범죄 방지법은 미국 형법전 중 시민권에 관한 18 U.S.C. 13장 § 249.에 규정되어 있다. 혐오범죄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화기, 총기, 위험한 무기나 폭발·방화

66) 이하의 내용은 김지영, 해외 장애인대상 범죄의 발생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2017), 63-64, 77-79 참조

67) 42 U.S.C. Chapter 126 Subchapter 1

장치로 상해를 입히고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그리고 혐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납치, 납치 미수, 중대한 성적 학대, 살인 미수가 포함된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sup>68)</sup>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다.<sup>69)</sup> 그러나 이 연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혐오 범죄가 국가 혹은 주 사이의 상거래와 관련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나 피고인이 주의 경계나 국경을 건너거나 외국 혹은 주간(interstate) 상거래를 위한 수로나 시설, 기구를 이용하거나 외국 혹은 주간 상거래를 통해 이동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sup>70)</sup>

#### (다) 관련 주법: 캘리포니아 주

미국은 주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신매매 관련 법제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로는 캘리포니아 주를 들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투명성 법은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Modern Slavery Act)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1) 공급망 투명성 법(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sup>71)</sup>

캘리포니아주의 공급망 투명성 법(SB 657)은 2012. 1. 1. 발효된 법률로 특정 기업에 대해 자사 제품의 공급망이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검증, 공시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소비자는 노예제와 인신매매 범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근절에 기여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 혹은 제조업자로서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100,000,00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공시 대상 영역은 검증, 감사, 인증, 내부 책임 및 교육의 다섯 가지이다.

해당 기업들은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품 공급망 검증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급망이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대한 회사 표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직접 공급 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재료가

68) 18 U.S.C. § 249. (a) (2)

69) 18 U.S.C. § 249. (d)

70) 18 U.S.C. § 249. (a) (2) (B)

71) 캘리포니아 주법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주로 요약, 정리함:  
<https://oag.ca.gov/SB657>, <https://oag.ca.gov/human-trafficking> 등

사업 수행 국가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 또는 계약업체에 대한 내부 책임 표준과 절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관리,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 및 경영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 2) 인신매매 관련 법령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은 캘리포니아 형법 236.1 장에 규정되어 있다. 2012년에 캘리포니아 성 착취 방지법(Californian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강제 노동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보호관찰에 처해지며 최대 12년의 징역형 혹은 \$500,000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외에도 민법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특정 사업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해 인신매매에 관한 표준 안내(model notice)를 게시하도록 하였고, 2017년에는 표준 안내 게시 업체를 확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되었다. 2019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해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게 하는 등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판례

### (가) 미국 대 카우프만(US v. Kaufman)<sup>72)</sup> 사건

#### 1) 사건 개요

사회복지사인 알란 카우프만(Arlan Kaufman)과 간호사인 린다 카우프만은 부부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미인가 그룹홈인 카우프만 거주 간호 센터(카우프만 하우스)를 운영하였고 인근 버틀러 카운티에 농장을 소유하였다. 카우프만 하우스는 캔자스 주 뉴턴에 소재한 3동짜리 건물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간 카우프만 하우스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은 1986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농장 노동을 하도록

72) 546 F.3d 1242 (10th Cir. 2008)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나체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했으며, 전기충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격리실을 처벌실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가두었다. 피해자들은 방에 갇혔고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었다. 그 외에 카우프만 부부는 합법적 심리치료를 한다고 주장하며 메디케어(건강보험)와 피해자 가족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 이러한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나 2001년 6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 보건복지부 요원들이 카우프만의 침실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78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들이 농장 노동에도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2) 판결

2005년 연방 대배심은 카우프만 부부를 기소하였고 강제노동 등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었다. 그 외에도 건강 관리 사기, 우편 사기, 연방 감사 방해, 메디케어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란 카우프만은 36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린다 카우프만은 8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주택과 농장은 몰수되었다.

### (나) 고용평등위원회 대 헨리 칠면조 서비스(EEOC v. Hill Country Farms, inc., doing business as Henry's Turkey Services) 사건

#### 1) 사건 개요

헨리 칠면조 서비스는 가금류 가공업자를 위한 근로자 공급 업체이다. 피해자들은 수십 명의 지적장애인 근로자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텍사스주에서 아이오와로 옮겨 와 공장에서 칠면조 가공 일을 하였다. 헨리 칠면조 서비스는 지적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음에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적은 \$65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다. 또한 업체의 사무직원이 피해자들이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는 예금 계좌의 지정 대표 수취인(designated representative payee)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숙박, 돌봄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들은 학교를 개조한 비표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방에 감금되거나 묶이거나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업체가 고용한 감독관은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때렸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불렀다.

## 2) 판결

2011. 4. 6.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가 32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국 아이오와 주 남부 지방법원에 헨리 칠면조 서비스를 상대로 미국 장애인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차별적 대우, 적대적 근무 환경의 유지에 대해 손해 배상 및 구제 조치(injunctive relief)를 청구하였다. 2012. 9. 18 법원은 헨리 칠면조 서비스가 42 U.S.C §12112(a)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2년간의 미지급 임금 \$1,374,266.53 와 판결 전 이자 \$283,568.06 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의 또 다른 청구에서 법원은 2013. 5. 14. 헨리 칠면조 서비스에게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600,000 및 이자 \$188,329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2013. 6. 11. 법원은 사업 재개시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에의 통지, 차별의 영구 중단, 사업승계 직원 등에 관한 미국 장애인법 교육, 정신 건강 상담사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를 승인하였고 헨리 칠면조 서비스에게 소송비용 \$10,487와 판결 후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헨리 칠면조 서비스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5. 9. 항소를 기각하였다.

### (다) 미국 대 바비 폴 에드워드(USA v. Bobby Paul Edwards) 사건

#### 1) 사건 개요

가해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콘웨이에 있는 J&J 카페테리아 매니저인 바비 폴 에드워드(Bobby Paul Edwards)이며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지적장애인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1990년 12세일 때부터 J&J에서 식기 세척부로 일을 시작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에드워드의 가족이 소유한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다. 에드워드는 2009년 식당 경영을 맡게 되었고 스미스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휴일 없이 주당 100시간 이상(월~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에드워드는 뜨거운 기름에 달궈진 집게로 스미스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수시로 벨트로 때렸고 헐박 및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으며 식당 뒤의 작은 방에서 살도록 강요하여 스미스는 다른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다. 2014년 식당 종업원의 장모가 에드워드의 행위를 신고하여 스미스는 학대에 서 벗어나게 된다.

## 2) 판결

에드워드는 18 U.S.C § 1589.에 의하여 2019. 11. 6. 징역 10년 및 \$272,952.96의 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 (3) 함의점

국내에서는 인신매매에 관해 ‘매매’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를 보면 강제 노동,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력이나 사기 혹은 강압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의 개념이 보다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력, 사기, 강압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장애인,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포섭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sup>73)</sup> 국내에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판례에서 보듯 가해자의 처벌은 범죄의 내용에 따라 미국 장애인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법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 형량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으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양하고 그 범위 역시 더 넓다는 점이다. 인신매매 범죄의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자주 문제시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적정 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인신매매 등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법령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74)</sup>

73) 어진아·최민경,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60. 이 때문에 미국의 법원에서 이른바 ‘취약한 피해자 증진원칙’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 의정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74) [참고문헌]

윤덕경·장미혜·박선영,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어진아·최민경,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김지영, 해외 장애인대상 범죄의 발생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2017).

Ruth Colker(김재원·박종현 번역), 미국 장애인법, 주한 미국대사관(2017).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년 겨울호(2006).

박미숙·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 라. 영국

영국에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법을 통해서 기존의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관련 범죄들을 통합했다.

### (1) 노예, 예속 및 의무적 또는 강제적 노동

#### (Slavery, Servitude and Forced or Compulsory Labour)

현대판 노예제법 제1조는 타인을 노예('slavery') 또는 예속('servitude') 상태로 삼고 있거나 (제1항 제1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시키고 (제1항 제2호), 이 상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한다. 제4항은 위 상황이 존재하는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대한 정의는 기존 영국의 판례 및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4조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최대 형벌은 종신형이다.

### (2)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제2조는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이동을 주선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최대 형벌은 종신형이다. 이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착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조 제6항은 취약한 사람('vulnerable persons')을 그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착취 대상으로 선별해서 어떠한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를 이용 또는 이용을 시도하는 행위가 명백한 착취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제4조는 제2조에 의한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인신매매를 돕거나, 사주하는 등의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형벌은 최대 징역 10년이지만 불법 감금이나 납치 등의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 (3) 범죄수익 회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범죄들에 대해서 영국 범죄 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 몰수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 (4) 배상명령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제8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영국 법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자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영국 의회는 인신매매 및 노예제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 명령의 빈도가 특히 낮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이 위 범죄 피해자가 당한 착취 및 수모를 배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5) 함의점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은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범죄들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형량이 높고 가해자에 대한 범죄 수익 몰수, 배상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착취 관련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 마. 유럽 국가별 판례

#### (1) 벨기에 Nr. 20.L4.4843/12 사건<sup>75)</sup>

##### (가) 사건 개요

벨기에 국적자인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기 위해 직접 슬로베니아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두 명의 장애남성이 자신의 사촌이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걸쳐 벨기에 내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이들을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구걸하도록 시켰다. 피해자들은 주 6일 동안 일해야 했고 모든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해자들은 벨기에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숙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와 타인의 구걸 착취(exploitation of

75) Nr. 20.L4.4843/12, 벨기에 Correctional Tribunal of Nivelles, 2013년 1월 25일.  
([https://sherloc.unodc.org/cld/case-law-doc/traffickingpersonscrimetype/bel/2013/correctional\\_tribunal\\_of\\_nivelles\\_25-01-2013.html?lng=en&tmpl=htms](https://sherloc.unodc.org/cld/case-law-doc/traffickingpersonscrimetype/bel/2013/correctional_tribunal_of_nivelles_25-01-2013.html?lng=en&tmpl=htms))

begging of others) 등 두 개의 범죄에 대해 기소되었다.

#### (나) 판결

벨기에 법원은 모든 피해자들이 신체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학대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슬로베니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벨기에로 데려와 이러한 행위가 일상적인 활동이 된 점,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사전 논의 없이 모두 비슷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 지원 혜택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생활상태에 관한 진술서의 내용, 위 진술서가 일관적이며 관련 증거가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이 독일과 슬로베니아에서 비슷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슬로바키아에서도 유사한 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국제적인 경찰 정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인신매매죄 및 타인의 구걸 착취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피해자1에게 17,500유로, 피해자2에게 2,500유로 및 원고3(PAG-ASA<sup>76</sup>)에게 도덕적 편견(moral prejudice)에 따른 1유로를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국가(벨기에)에 대한 벌금으로 30,000유로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였다.

### (2) 네덜란드 ECLI:NL:HR:2011:BR0448 사건<sup>77)</sup>

####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착취하여 청소와 식료품 구입 등 피고인의 집안일을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거나 집안일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를 괴롭히면서 피해자 본인의 돈으로 대마초를 사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안일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돈을 주지

76) PAG-ASA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투쟁하는 벨기에 NGO이다.

77) ECLI:NL:HR:2011:BR0448, 네덜란드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2011년 12월 20일, ([https://sherloc.unodc.org/cld/case-law-doc/traffickingpersonscrimetype/nld/2011/eclinlhr2011br0448\\_.html?tmpl=htms&lng=en](https://sherloc.unodc.org/cld/case-law-doc/traffickingpersonscrimetype/nld/2011/eclinlhr2011br0448_.html?tmpl=htms&lng=en))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쳐서 잠들면 그를 폭행하였다.

#### (나) 판결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참아 낼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을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위 행위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상태로 인해 특별히 취약하고 당해 상황을 멈출 정신적 힘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설득당하기 쉽고 피고인의 명령을 거절하기 두려워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항소법원은 피해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은 점과 피해자에게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황이 ‘착취’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 착취의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착취’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주장은 배척하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행한 집안일은 그 성격상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Hoge Raad, 27 October 2009, LJN BI7099, r.o. 2.6.1.)를 인용하여, 특정 상황이 착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관계의 지속 기간 및 성격, ② 피해자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 ③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우정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사전에 피해자를 착취할 의도를 가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법원은 모집, 이동, 수송, 은닉 및 인수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이유나 유죄의 일부가 아닌바, 착취 상황의 존재가 입증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착취할 형사법상 목적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네덜란드 형법 제36f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무형의 피해가 배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법원의 인신매매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500유로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

### (3) 독일 Agnieszka Magdalena B. et al 사건<sup>78)</sup>

#### (가) 사건 개요

피고인 2인은 독일 국적자로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하였으며 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직이었고 사회보장수급자였으며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폴란드국적의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또는 직접 만나서 ‘독일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관련 서류 처리 및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러 가거나 독일로 찾아오면 맞이하러 나갔으며, 만났을 때 폴란드 여권을 빼앗은 뒤 아래 문구가 쓰인 명함과 함께 동물인형 열쇠고리를 팔게 하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농인이고,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단지 작은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품”을 4유로에 드립니다. 돈을 더 내고 싶다면, 이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들은 쾰른,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본, 해노버 등 지역의 술집과 길거리에서 열쇠고리를 팔았고 대부분의 수입은 피고인들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급한 음식과 캠핑장의 캠핑차나 열악한 아파트 등 부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도록 정기적으로 폭행하였다.

#### (나) 판결

법원은 거짓 약속에 속아 독일에 온 시각청각장애인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계속 남아 있었던 점 및 피해자들로부터 취한 금원이 피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데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위 판결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피고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각 판결하였다.

78) Case 106 Ls-50 Js 208/07-58/07 in the District Court of Düsseldorf, 2012년 1월 26일.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DF-Dateien/Gerichtsurteile/Rabe\\_2011/ag\\_duesseldorf\\_26\\_01\\_2012.pdf](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DF-Dateien/Gerichtsurteile/Rabe_2011/ag_duesseldorf_26_01_2012.pdf))



#### (4) 함의점

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각 판례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를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각 판례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의 형태가 일반 가정의 가사노동부터 길거리 구걸, 물건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날 경우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차별과 폭력에 더욱 취약한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벨기에와 독일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사소통 능력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피해자들을 착취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네덜란드 대법원은 '착취'의 구성요건을 제시하며 노동착취는 목적범이 아니고 착취 상황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유럽 각 법원의 판례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의 한계나 피해자들의 수익 사용 등이 이미 발생한 노동착취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대안 및 개선방안

- 가. 실체법상 개선방안
- 나.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 6. 대안 및 개선방안

### 가. 실체법상 개선방안

#### (1)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장애인 대상범죄 별도 구성)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범죄는 범행지속기간이 길고 피해가 반복적이지만 형사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폐되는 비율이 높다.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된 장애인학대사례가 2019년에만 945건에 이르고 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에 이르렀고,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 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고,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sup>79)</sup> 노동착취피해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회복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연방과 주정부 양자에서도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대상 범죄의 구성을 보면 일반범죄, 증오범죄, 재정적 착취범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 등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불법요소 및 신분요소를 고려하여 처벌하고 있다. 증오범죄의 내용으로 장애혐오에 의한 범죄를 추가하여 일반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장애인대상 일반인의 범죄는 양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고려한 형의 양정을 유도하여 양형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 착취범죄 및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하여도 신분적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를 별도 구성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별 법률에 산재<sup>80)</sup>되어 있고, 장애인 학대 관련 정의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실무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장애인

79)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전국 장애인 학대현황보고서』

80) 1. 노동 관련범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자폭행, 강제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  
2. 일반 형사범죄- 영리약취 유인, 직업안정법위반 등, 경제적 착취(준사기, 횡령,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신체적 학대(감금, 폭행, 상해, 살인 등)  
3. 장애 관련범죄-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실종아동법위반 등

대상 범죄 또는 장애인 학대 범죄 관련 처벌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범죄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가칭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필요하다.<sup>81)</sup>

## (2) 장애인 노동착취행위의 양형 개선

장애인 노동착취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노예, 먼 과거에나 있었던 인간성의 완전한 박탈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우리 사회가 매우 강력히 처벌하여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의 수위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sup>82)</sup>

장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기에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장애인 학대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양형이 정해지고 있고, 가중사유가 될 양형사유가 오히려 감경사유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법관 및 검사의 인식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대상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대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성폭력사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장애인학대관련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하고도 통일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양형기준을

81) 이와 관련하여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범죄는 아동 학대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보호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해자를 ‘보호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82) 최정규 외 7, “엄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24쪽 “본 연구의 대상인 39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33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쳤고, 이중 7명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각장애 1급에 지적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6년 11개월 동안 감금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가해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명의 지적장애인들을 각 6년 10개월, 2년 6개월 동안 붙잡아 놓고 강제로 일을 시킨 자 역시, 다른 많은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를 14년 1개월 동안 감금하여 영리유인죄, 감금죄, 근로자에 대한 폭행죄, 준사기죄 등으로 모두 기소되었음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자도 있었다. 가해자의 아버지 때로부터 21년 동안 대를 이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인간이 21년 동안 감금되어 강제노동에 혹사당하였음에도 가해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이다.”

마련할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력착취사건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의 양형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후에도 노동력착취사건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기존의 형벌이 일반예방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노동력착취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대검찰청 차원에서 논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선 검찰청에 시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83)</sup> 아울러 민법상 소멸시효 등 법체계를 완비하여 노동력착취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10년분에 머무르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 (3) 장애인대상범죄 통계 공표

미국의 경우에 형사사법기관종사자에 대해 장애인대상범죄 관련 통계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연방의회는 관련 법률의 입법을 통해 분석결과를 관련기관 내부에서 정책수립과 이행의 측면에서 참고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장애인대상범죄의 발생 현황을 일반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일반시민의 인식 확대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범죄의 통계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의 대응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찰청의 발생통계원표에는 가해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가해자의 정신이상유무나 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피해자의 경우는 이러한 정보조차 수집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장애인 대상 범죄통계수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방법은 경찰청 발생통계원표에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과 같이 사법기관의 공식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대상범죄동향을 별도로 작성하고 공표하는 방법이 있다.

83) 실제 청주타이어노예사건의 경우 준사기죄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검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청주지방법검찰청 2016형제 35509, 36905호 사건]

## 나.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 (1) 경찰·검찰 수사상의 개선방안

#### (가) 수사기관의 법적용의 문제

##### 1)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문제가 통상적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처리된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30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일괄적으로 3년치의 임금을 계산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84)</sup>

행위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가 문제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sup>85)</sup>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자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자신을 '형님' 등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하며 노동력 착취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의례히 피해자와 먼 친척 관계라거나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는 사실상의 가족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아울러 체결한 근로계약도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sup>86)</sup>에 따라 무

84)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6)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효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 상호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sup>87)</sup>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가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애인 노동력착취의 틀에서 종합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들은 이 법 제59조의9 각호에 규정되어 있고, 벌칙은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중 폭행·노동력착취·구결·체포나 감금·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일부 행위들은 형법의 특칙들로서 가해자를 형법이 정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다른 행위들은 형법이 처벌하지 않거나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기 어려운 행위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sup>88)</sup> 과거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들을 한 사람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최근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이 존재하고, 형법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 장애인 복지법위반은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차별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효로 한다.

87) 염전노예사건과 관련 염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염주 측에서는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이 있었기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장애인과 염주 사이에 근로계약 등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염주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0610 손해배상(기) 등].

88) 가령, 형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제32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를 통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문 내용을 확인하여 충실히 수사 및 기소할 필요가 있다.

#### (나) 수사기관 종사자 인식의 문제

##### 1)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특성의 이해

장애인 노동력착취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의존적인 관계, 사회적으로 제한되거나 고립된 환경, 정보접근의 어려움이나 정보부족 등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이용하면서 시작되고, 노동력 착취자와 피해장애인 사이에는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피해자와 노동력 착취자 사이의 권력관계는 반드시 힘의 우위나 지위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판단 혹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도움을 요청하여도 묵살되기도 한다.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살 곳이 없어지거나 그나마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며,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유사한 학대가 끝없이 재발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사례를 살펴보면 권력관계의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89)</sup>

89)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40면 이하

- ①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학대행위자 내지 제3자의 의사에 따라 권력적 착취 관계가 시작됨.
- ② 피해자는 금전 제공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음.
- ③ 권력적 착취관계 형성에 대한 협이가 아예 없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내용으로 관계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④ 법에 따른 계약서 등이 교부된 경우는 전혀 없음.
- ⑤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거나 학대 행위자의 주변 내지 학대 행위자가 지배하는 장소에서 생활함.
- ⑥ 학대 행위자의 폭행, 협박, 회유 혹은 의식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의존관계, 피해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나 내용, 착취적 관계 해소에 관한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신체·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오랜 기간 학대행위를 지속하는 ‘계속범’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통 장애인 노동력착취자들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월급(혹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연금) 등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장애인으로 부터 통장과 인감, 신분증 일체를 넘겨받으면서 착취자들의 의사에 따라 권력적 착취관계를 시작하고,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이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지속시킨다. 피해장애인은 이에 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착취하는 자들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노동력착취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밀감마저 느낀다. 이를 주도면밀히 이용하는 착취자들은 피해장애인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고, 피해장애인은 머슴·노예와 같은 지위에 놓이는 착취의 구조에서 착취자들의 말을 거역하거나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피해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증(및 통장·인감 등)을 담보 잡힌 채로 착취자들의 지시를 받아 고된 노동을 십수년 이상 지속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장애인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쉼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장애인의 지적장애를 부정하고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더 떨어져서 일상대화가 곤란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면 이와 같은 노동착취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지적 능력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었다면 그와 같은 말도 되지 않은 조건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었기에 열도당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고된 노동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노동착취는 경증의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많은 피해장애인의 사리분별능력이 충분치 않지만, 지적 능력이 아예 없지도 않았다. 피해장애인의 지적장애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평가되고, 재단되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십수년 이상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노동착취자들이 관리하는 자신의 신분증(및 통장·인감)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처우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일하다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신의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조달하였을까? 이것이 말도 안되는 사회적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현대판 노예사건 가해자들의 일방적 변명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장애인 학대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썸썸이가 해픈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돈을 대신 보관 또는 모아준 것이다’, ‘피해 장애인을 대신해서 적절히 사용하였다’, ‘단순한 임금체불 혹은 민사상 해결할 문제다’는 등의 일방적 변명으로 오랜 세월 가하였던 피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2)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대상범죄에서 가해자 처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 장애 및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이다. 이러한 사실은 질적자료와 판결기록의 처분결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검찰의 불기소처분사유에서는 문자해독력이 낮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돈을 주고 받아낸 ‘처벌불원서’는 인정하는 반면, 피해자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사실은 불인정하였으며, 여러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형사유에서도 ‘보호자의 역할수행’이 가중사유인 동시에 감경사유로 기재되어 장애인대상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분열적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예방차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면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유사범죄는 재발·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을 접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또는 보조인)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영역에만 존재하여 노동력착취 피해 장애인들이 사법절차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이 제공하는 절차적(또는 법적) 지원과 의사소통지원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효과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범죄유형별로 그 필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를 가진 모든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염전사건을 지원했던 변호사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고민하였던 것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해자 대리인’ 혹은 ‘피해자 변호사(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변호인 선임권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물론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6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의견 진술 등을 변호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일반 조항으로는 아직 피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염전사건 중 하나인 해남지원 2016고단222 사건을 지원하던 변호사들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5항,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당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공판절차에 관한 기록 열람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재판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헌법 제27조 제5항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전반에 피해장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신뢰관계인의 동석’, 기타 피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피해장애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적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도록 한다.<sup>90)</sup>

지적장애인이 참여하는 수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① 지적장애인의 사법절차 자체 및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한 이해 정도, ②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③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지적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법기관은 가능한 쉬운 용어로 해당 사법절차를 설명·진행하고,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그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피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신문할 때에는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장애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 사법지원은 사법기관의 직권에 따라, 혹은 장애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제공될

90)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고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아니오”를 묻는 질문이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라는 요구에는 적절히 답변하지 못할 수 있고, 특히 이유를 묻거나 인과관계를 묻는 논리적 질문을 하는 경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고, 질문을 반복하거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특정한 답을 유도하거나 그 답을 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법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것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신청할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sup>91)</sup>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장애인(및 피해장애인의 대리인, 지원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에 관해 고소를 제기하기 전후 또는 소송 제기 전후 신문과정 등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에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기하거나 직접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장애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사본,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사법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 참여를 조력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거동을 돕거나 사법절차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은 사법지원의 하나로 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92)</sup>

특히 정신적 장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사람을 신문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집중력 감소 등을 참작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9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92)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사건에서 당사자신문기일에 원고와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활동가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허가를 통하여 장애인관련자로서 원고와 동석한 적이 있었다. 원고는 신문이 길어지면서 매우 힘들어하였으나 장애인관련자가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차분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다.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며, 가능한 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할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적 장애인의 지적 발달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절차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근로감독관 조사상의 개선방안

노동 관련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한다.<sup>93)</sup>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되고 업주와 피해자들 상호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행여 현행과 같이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을 노동 관련 범죄로 분류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전제로 근로감독관들이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93)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7장

## 결론

## 7. 결 론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범죄이다. 비록 우리 형사 법규에 노예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인하여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거나 물건처럼 파는 행위들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각 가해 행위별로 결정된 죄목에 따른 형량이 경합범의 형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형은 그 수위가 결코 낮을 수 없다. 또한 만일 노예처럼 부려진 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권익을 수호하고자 주목하는 자들이라면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되어 처벌된다.<sup>94)</sup> 이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염전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가해자들의 처벌수위는 늘 낮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기 일쑤였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현대판 노예사건이다. 노동력착취 사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었고,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25년 이상 붙잡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금전관리를 해주겠다고, 혹은 가족같이 함께 일하자는 꼬임에 빠져 학대현장에 유입됐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부실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발로 얻어맞기 일쑤였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다. 피해자들 중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새롭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외딴 섬에 끌려가 염전과 양식장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무연고 장애인이 강제 입원되고, 장애여성이 이웃에 의해 수년간 성폭행 피해를 겪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94) 최정규 외 7인,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 인권분야 연구 결과보고서’ 24쪽, 2017년 6월

피해자들 중 다수는 아직도 염전에 머물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지원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염전노예 사건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의 인신매매범죄라는 측면과 장애인인권침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사회가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 보아야 하며, 장애인을 노동력 착취 행위자에게 맡기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로 포섭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력 착취 근절 대책은 크게 보아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안, 이미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형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까지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재차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은 장애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들이 응집되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강원, 『염전노예사건의 반인권성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 2015
- 김성돈, 『형법각론 제4판』, 2016
-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2009
- 김종철,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vol.444, 2014년 9월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
- 이정민,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염전노예사건 민간 조사결과”,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4. 6. 9.
- 최민영,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3
- 최정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의 문제점”,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2019
- 최정규 외 7,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부록

- 부록1 제1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부록2 제2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부록3 제3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부록 1

제1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제1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내용

가.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9:30 ~ 11:30

나. 발제자 : David Hutt

-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 부상임이사 및 선임변호사

다. 발제 내용

1) P&A 등장 배경

P&A는 최악의 노동착취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Henry 칠면조 공장 사건 이후 대리수령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간단한 서비스부터 법률 서비스 (행정 소송, 집단 소송 등)까지 지원하였다.

2) P&A 역할

P&A기관은 인신매매 사례를 수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허점을 찾아내거나 은신처 또는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위반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직원 인터뷰가 가능해졌으며 재정 착취에 대해 조사하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사회안전보장 수당 착취 등을 명료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노동착취 관련 법령

체불임금을 받아낼 때는 공정근로기준법 또는 각 주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애틀 주의 경우 최고 수준이 15\$에 달한다. 또한, 공정근로법 위반으로 노동부 내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 이후 체불임금을 받아내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주나 연방 법원에 기소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착취를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근로법 14조 조항을 근거로 한다.

미국장애인법 (ADA) 역시 노동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법이 되기도 하는데 ‘노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역시 기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적 인신매매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다뤄지도록 보고 있으며 최장 종신형에 이른다.

#### 4) 장애인 노동착취 사례

‘Kaufman’ 시설 사례는 법 제정 이후 성공을 거둔 사례로 볼 수 있다. ‘Henry 칠면조 공장 사례의 경우, 32명의 남성 장애인들이 텍사스에서 아이오와 주로 이동하여 일을 하게 될 때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보고 지역 이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관료들은 이들이 집을 제공 받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적발되었는데 장애 당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대리수령 문제도 함께 수반되었다. 집과 옷이 제공되긴 했지만 사회안전보장수당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P&A 제도가 생겨났으며 처음엔 검사들이 장애 당사자들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 증언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건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노동부가 나중에 소를 제기하여 결론적으로 약 21억원의 배상금과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DA법에 근거하여 약 15억원에 달함)

### 라. 질의응답

#### 1) 질문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가해자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게 된 이유나 원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1-1) 답변

형량이 중한 이유 중 하나는 법무부 관계자 특히, 인신매매 기소 관련된 관계자들이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 개별 미국의 지방검사실에 관여한 케이스 말씀을 드리면 특히 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무부에 본부가 있는 기소국에서 특히 일부 검사들이 기소에 관여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 증인에 대한 의존도, 특히 발달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기소 담당국이 전문가(장애인 단체와 협력)과 함께 성과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라는 곳이 있는데 장애당사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기소 기간도 있지만 법무부 내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이들이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성과가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사 기소 측면에서는 법무부와 미국 내 인신매매를 담당하는 NGO들이 많은데 노동 및 성적 민간단체에서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DRN에서는 특히 노동 및 성적 인신매매를 더 자세히 봐야 한다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P&A의 경우, 노동 인신매매가 아닌 학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Kaufman' 사례의 경우는 정신장애인 학대로 봤습니다. 인신매매나 노동착취로 보지 않았습니니다. 이전에는 P&A기관에서 인신매매나 노동착취가 국경을 넘어야 성립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관여되어야지 성립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동 인신매매가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 2) 질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노동학대, 노동착취, 노동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가 미국 내에서도 존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학대 개념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구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2-1)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보호 피해자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요, 위협, 위압에 의해서 누군가가 노동시키면 그것이 인신매매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요. 착취의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불법적으로 내지는 부적절하게 14c조항을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관련해서 P&A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문회를 열고 제대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14c조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착취는 인신매매가 아닌 거지요. 상당 부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착취로 보겠습니다. 학대는 더 광범위합니다. 옹호 시스템 체계 안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데 특정 활동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대우해주지 않는 것, 형법 상으로 기소할



순 없지만 민권에 접촉되는 정도로 잘 대우해주지 않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 3) 질문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을 보면 수당이 무력, 사기, 강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장애에 특화된 법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된 법률상 정해진 수당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3-1) 답변

사실 그것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이 답변해주실 부분입니다. 어떻게 형사 기소를 할 때 어떤 요소를 보는지는 그분들이 담당하니까요. 분명한 것은 기소, 민사건 관련 과거 사례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대에 서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Henry’ 사례 경우, 이것이 민사 사건이었는데요. 증언대로 부르지 않기로 변호사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나 증언을 듣게되면 이것이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 법 자체는 제가 해석하기엔 사실 배심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고려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강압적인 사례인지, 발달장애가 없었으면 어떻게 대우를 받았을 것인지요. 1984년 대법원 사례 중에,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강제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에는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강압 받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윤리적인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이 정시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회가 관련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약성에 대한 강압 우려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의 검사들이 어떻게 이 법률을 적용 및 해석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네요.

### 4) 질문

지금 노동력착취 목적에 장애인 인신매매 그러니까, 장애에 특화된 현황 통계가 있나요?

#### 4-1) 답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 때문에 여러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인신매매 워크북이란 것을 만들어서 장애인 단체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착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숫자는 있지만 총 합계라고 할 수 있죠. 큰 숫자는 있지만 상세한 것은 없는 것이죠. 변호사 몇 명이 12건 내지는 그 이상 정도의 건을 인신매매보호자법 하에 인신매매 사례에 이 법에 적용해서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약 10년 동안 식별된 건수가 12건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이런 숫자를 잘 추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관련된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큰 성과가 없습니다.

## 5) 질문

인신매매 관련 NGO단체에서 주별로 주법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평가한 것들이 지표를 보았는데요. 그 지표가 2014년 정도까지만 있고 그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평가를 안 한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연방법 외에 어떤 주법을 살펴보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5-1) 답변

우선 노동착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노동착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지원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것인데요. P&A기관이 오레건 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가 있고요. 좀 더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란 내용인데요. 또 뉴햄프셔 주도 있네요. 10년 정도 됐는데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주보다 나은 것이에요. 아마 좀 더 서비스를 측정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메릴랜드 주도 그렇습니다. 메릴랜드 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시스템을 다 이야기할 순 없지만 활동가들이 주 의회와 협력해서 최저임금 이하 지급 폐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에선 이 부분이 매우 문제가 되는 조항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메릴랜드 주를 추천해드리고요. 주 법 중에 노동착취를 형사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다른 민사 부분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이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주법이 마련이 되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이나 민권이 잘 보장되어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좀 더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6) 질문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장애인 노동착취가 잘 처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가 돌봐주었다는 등의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런 변명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상황이나 수사기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 궁금하고요.

## 6-1) 답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시민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돌봐주고 있었다, 돌보지 않았으면 노숙인이 됐을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지요. 무허가 집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집들의 환경을 보면 최상의 여건은 아니지만 보통의 여건이기 때문에 ‘집을 제공해줬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과 그렇게 생각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있으나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주기 위한 움직임도 지난 10년 동안 있어왔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면 별로 불편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 어떤 일이라도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착취의 경우,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들이 더 잘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헨리 터키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처음 사건이 발단되었을 때는 70년대 이 피고인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직업이 아예 없었을테니까요. 그들이 월급을 65달러 받으면서 칠면조의 내장을 꺼내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가 상을 받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 40년 만에 바뀐 것이지요.

## 7) 질문

지적장애 피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때 진술을 조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7-1) 답변

연방 차원에서는 꽤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P&A기관에 연락해서 전문가를 섭외하고요. 각 모든 주가 발달장애 관련된 서비스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연방검사와

전문가들 간에 구축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잘 구축되어있고 형사 측면에서는 연방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과 지역에 있는 검찰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와 관련한 현안에선 잘 알지 못해서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지적장애 당사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법 집행과 관련해서 위기 상황에 있어 장애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메릴랜드 등 주에서는 관련 제도를 만든 경우도 있었죠. 최소한 연방 차원에서는 전문가 조언을 구하지만 일부 P&A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 차원의 법 집행관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노동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DRN 관계자들과 연결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주선하기도 합니다.

## 8) 질문

적용되는 법과 개입되는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8-1) 답변

사실 몇 가지 사항이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시민권 측면에서 P&A 기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이 있고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거나 공정근로기준법이 위반 됐을 경우, 개인이나 그 가족 혹은 친구가 P&A 측에 연락을 하고요. P&A가 의뢰를 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장애인법 등이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이 개입을 대비해서 소송을 걸지 말지 결정하고요.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행정소송 등, 장애인이 관련되면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요. 저 역시 장애인법 하에서 이것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위반되는 경우, 민사법이 위반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돕고 있고요. 형사 기소 경우에는 주 보다는 연방 차원에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 비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무부나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관련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행정을 맡게 되는 것이죠.

## 9) 질문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를 아까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 카테고리에서 장애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는지, 주된 피해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9-1) 답변

장애 사안이라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확실히 부각되었습니다. 인신매매에서도 장애인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얼마나 장애인이 취약한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더 정교해졌으며 이에 따라 인신매매를 다루는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핫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10) 질문

P&A기관에서 먼저 사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비율이 전체 비율의 얼마를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 10-1) 답변

여기에 대해서 통계나 숫자를 드릴 순 없지만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A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면 먼저 가서 조사할 수 있으며 누군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 경우 그냥 집단 시설에 가거나 정신 지체 관련 기관에 가서 돌아다니고 감독 감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부록2

## 제2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제2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내용

가. 일 시 : 2020년 8월 21일 (금) 9:30 ~ 11:30

나. 발제자 : Sean Tepfer

- 법무부 민권국 범죄과 내 인신매매기소팀 전국 프로그램 팀장
- 장애인 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노동 인신매매 사건, 국제 성적 인신매매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인신매매 사건을 담당
- 인터폴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미국 대표로 참가

다. 발제 내용

#### 1) 인신매매기소팀 소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의 기술이 필요하다. 인신매매기소팀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검사관, 수사관, 피해자를 도와주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에 많은 제안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 들에게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기도 한다. 검사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연방 검사들을 만나며 도움을 주고 있고 초국가적으로 협력을 하며 새로운 종류의 인신매매 범죄가 있으면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다.

#### 2) 노동착취 관련 법령 및 사례 설명

- Bob & Louis (1980년대) “United States v. Kozminski”

본 사건은 위스콘신 주 (캐나다 북부 인근 지역으로 농가가 많고 매우 추운 날씨)의 한 시설에 있던 Bob(인지장애, 9~10살의 지능)이 시설에 있기가 싫어 길을 걷다가 Kozminski (여성)의 회유로 어느 농가에 가게 되어 벌어진 일이다. 그는 임금을 받지 않은 채로 일하였으며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는 일도 많았고 헛간에서 잠을 청했다. 행위자는 Louis에게도 같은 일을 행했다.

- 2000년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비자발적인 노역과 관련된 부채 노역 관련 법령이 있었다(남북전쟁 이후에 통과된 법안) 그러나, 신체적인 폭력만 포함시키고 비신체적인 폭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자발적인 노역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정서적인 폭력도 포함되기는 하였다.

### 3) 인신매매 관련 법령의 함의점

- 인신매매 강제노동 핵심법 - Forced Labor, 18 U.S.C. 1589조.

(1)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함

(2) 타인에게 노동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밝혀야 함

노동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전통적인 일 또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어도 되며 (가사노동, 식당, 농가, 불법 노동, 마약 밀매 모두 포함됨)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 강제노동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금지된 도구'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인지장애(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아래의 4가지 방법을 활용.

A. Force and restraint (무력, 힘)

B. Threats of serious harm (심각한 위협)

→ 반드시 육체적인 위협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C. Abuse of process (절차의 악용)

D. Coercive scheme (강압적인 계약)

→ 이는 주관적인 해석이 강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린다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악용한 것인지 다양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약과 패턴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주위 상황에서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환경에 놓인 다른 누군가도 같은 종류의 위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해야 한다.

- 인신매매범은 장애당사자의 취약성을 파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갈림길에 서게 함

1) 일을 한다 또는 2) 심각한 위해를 겪게 된다

‘심각한 위해’는 신체적, 비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재정적, 평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고립’시킨다는 특성이 있는데 피해자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전화기 등)을 모두 빼앗고 여권 등의 문서를 압수하며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언어의 장벽을 박탈해버린다. 경제적인 부채노역이나 임금 갈취 등도 있으며 특정 장소로 오라고 유인한 후 밥을 먹었으니까 얼마만큼 월급에서 떼가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할 때 요청하면 돈을 주겠다고 보통 이야기 하지만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 독립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이에 따라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거나 일을 한다. 또한 피해를 당해도 가족들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나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족에게 어필하기 원함) 인신매매범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 성적 인신매매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인데 마약 중독, 화학 약품 중독, 금단현상을 악용하기도 한다.

-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조작하는 상황 발생

피해자 스스로 ‘난 노숙인이야’, ‘일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굶게 될거야’ 등 여러 상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사고의 구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주하는 질문이 “Did the defendant threaten to inflict the serious harm?”이며 이 질문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인신매매(Trafficking), NO라고 답할 경우 착취(Exploitation)로 판단한다.

- 이 사건이 ‘인신매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등식이 필요

: Victim + Circumstances + Threat = Sufficient to compel

이에 앞서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 ‘피해자들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가’, ‘피해자들은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가’, 그 다음에는 ‘위협, 공포가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가’이다.



## - Vicitim

피해자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지, 특히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취약점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대응했는지 비교를 해보는데 때때로 찾기가 참 힘든 취약성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 당국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장애 전문가가 또는 조현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는 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어떤 보호와 어려움을 겪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종종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종류의 강압에 취약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전문가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 인터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 Circumstances

: 앞서 언급한 갈림길이 그 다음 과제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이야기했는지, 그 과정이 강압적이었는지 살펴본다. (Spoke authoritaively, Long hours, Low or no pay, Inadequate food and shelter, Inadequate clothing, No medical care, Verbal abuse, Physical abuse, Threats of institutionalization)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며 가난 등의 이유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방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심리적인 감옥이 만들어지고 '비폭력적인 강압'을 통해서 복종하도록 만들며 강압이론 형성된다. 피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칠면조 농장 사례에서 피의자는 농장에서 일할 사람 필요했는데 다른 농장주라면 구인 광고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Bob과 Louis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 - Threat

직적장애를 악용한 것이라는 사실, 피해자들의 순종적인 태도를 가해자들이 악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4) 인신매매 법령 판례에 관한 설명

(사례1) 이 사례의 가해자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시스템 즉,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수당 등을 갈취하기 위해 애인이라고 속이고 많은 장애 여성들을 집으로 데리왔고 아파트를 여러 명과 함께 운영하며 그 수를 더 늘려갔다. 장애당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가해자는 이들에게 폭행, 안정제 투여, 감금, 심지어 살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 사례의 가해자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며 사건 공모자들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례2) 카프만하우스 사례는 미국 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례이며 가해자는 캔서스 주의 심리학자였다. 이는 그룹홈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여러 명과 함께 살았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대부분 무연고자였으며 이들은 청소 일 등을 하였다. 이 사례가 더욱 기이했던 것은 가해자가 본인이 심리학자인 것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치료의 일부’라고 주장했던 점인데 그는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기고 생식기를 만지게 한다든지 매우 끔찍한 행위들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켰다. 본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더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이 ‘치료’의 장면을 모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들 서로에게 성행위를 시키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이 비디오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그래서 성적인신매매가 아니었음) 이것이 성적인신매매가 아니라면 무엇일지 법적 해석을 한 결과, 결국 피해 장애인들은 무급으로 포르노 배우가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형태이든 ‘강제노동’이 될 수 있다.

(사례3) JJ카페테리아 vs 크리스 사례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농촌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 크리스는 50대 남성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설거지도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으나 돈을 받지 못했으며 휴가 또한 전혀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료보험도 없었고 가해자는 크리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찰, 판사, 시의원들과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 해두었다. 이 지역에서는 가해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크리스가 일을 잘 못하면 구타도 하고 집계를 불에 달구서 목을 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농촌지역에서 일어날 경우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는데 실제로 가해자의 동생이 경찰관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그 누구도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난제인 경우가 많다. 본 법은 기본적인 최저형량이 없고 강제노동에 관한 양형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죄질에 따라 더하거나 줄일 수 있고 4년까지 더할 수 있다. 위험한 무기를 사용했거나 다른

중범죄도 행해질 경우에 그렇게 된다. 무임금 노동은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었고 크리스가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가해자에게 10년 징역형과 약 2만7천달러 배상이 선고되었다.

## 라. 질의응답

### 1) 질문

폭력 없이 인지적인 장애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의 경우, 장애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노동력 착취에 동의하는 경우엔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1-1) 답변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착취, 사기, 절도의 문제이냐. 강제 노동의 문제이냐. 양 쪽 둘 다 피해장애인이 초반에 동의했다고 하면 변호인이 이런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따지게 됩니다. 속임수나 사기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며 있었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게 되지요. 동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의 속임수나 계획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100달러를 받고 한 달 동안 일한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위협을 했다면 강압을 한 것이 맞게 됩니다.

### 2) 질문

인신매매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들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수사 받는 절차의 지원도 궁금합니다.

#### 2-1) 답변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 받게 됩니다. 정부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상담, 주거 등의 서비스를 받게되고 장애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부 또는 NGO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인신매매 법령 등과 관련해서 배상 받도록 돕습니다. 크리스VS바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7만 5천달러를 배상 받았습니다.

### 3) 질문

- (1) 인신매매와 착취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인신매매로 인정된 사건은 노동과 관련된 위반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인가요?
- (2)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특별한 수사 기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3-1) 답변

- (1) 노동법 위반이 저희 팀 담당입니다. 노동부 내 특정 부서가 있는데요. 임금이 어떻게 체불 되었는지 조사하고 고용주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가지고 갑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강압에 의한 노동을 조사하고 이 피해자에게 강압을 했더라는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요. 개인 뿐 아니라 다른 곳에 고용된 개인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에 걸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에서는 이들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내지는 이 개인이 또 기업에 소속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증명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됩니다. 죄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지만 민사쪽에서는 기업, 가해자의 기업을 조사하게 되는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강압에 의한 노동이 있었다는 것 즉,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형사법을 이용해서 강압에 의한 노동을 증명하기 힘들다면 신체폭력이나 공격, 폭행. 형사법 근거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2) 강압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실을 기억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강도가 은행을 터는 동안 단 1~2분인데도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노동착취 사례의 경우 수 년 동안 피해 받았기 때문에 뇌가 손상을 입게 되고 사실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지요. 그런데다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더욱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포렌식 인터뷰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증명하는 어떤 기법으로서 아동에게도 가끔씩 적용되는 이 수사법을 장애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뭔가를 묻기 보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우리들이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30년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익혔던 기술들이 인신매매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수사법이 필요합니다.

## 4) 질문

부모가 자녀를 사찰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승려인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킨 것이죠. 마치 노예와 같아요. 사찰에서는 돌봐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는 부모도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도 처벌 받지 않거나 매우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부모를 처벌하는지,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1) 답변

가족들이 스스로 자원이 없거나 돌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제가 부모에게 적용할 기준이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노력을 해서 자신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또한 인증된 시설로 보내려 했느냐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된 시설이라면,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를 돌봐줄 것이라는 말을 부모가 들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면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가 이런 시설에 방문해서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 지 체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아니면 시설에 자녀를 넣어놓고 신경 쓰지 않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죄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힘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당사자 앞으로 지원되는 수당 등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시설 같은 경우,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기준들을 지켰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아니면 상당한 노동을 하도록 강압했는지, 동의 없이 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보기로 해놓고서 방치했다면, 강요 없는 상태에서 방치했다면 다른 형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지원금, 재정을 가족으로부터 받는지, 가족들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는 돈을 시설이 받았는지, 정부로부터 받았는지에 따라서 정황이나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이를 통해서 시설이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다른 시설들과도 비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비슷한 배경의 인물이 다른 시설에 갔을 때 그 분야의 표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비슷한 사람과 일해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건 별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5) 질문

ADA법 위반이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5-1) 답변

ADA같은 경우는 민사가 주로이지만 형사법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형사쪽에서 인신매매, 민권 위반 사례, 증오범죄 등 경찰에 의한 범죄를 주로 보고 있는데 배제 하지 않을 것은 강압에 의한 노동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법이 하지 않는 것이 형사를 기소함에 있어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강압에 의한 노동이 제일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30년 양형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임금과 관련된 건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 6) 질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 등 낯선 사람이 두려워서 피해 현장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강제적으로 구출하려고 하는지 등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 6-1) 답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저의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인신매매라는 것,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루틴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통해 일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지요. 장애인들과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파트너십 활용하고 지인이 있을 경우에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구조라는 건 또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드러운 기술이 수반됩니다.

### 7) 질문

P&A기관 등 학대를 초기에 적발하고 수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노동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거치게 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절차 중간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떻게 협조하는지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7-1) 답변

미국에서 형법상 연방법원이 있고 주 법원이 있습니다. 연방법원 시스템인데요. 노동, 성적매

때 인신매매에서 다기관과 함께 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랑도 같이 일하고 연방과 주 모두 장애인의 경우, 수사관들이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서비스 제공자. 옹호인. NGO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NGO에 펀딩을 제공합니다. 입찰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고요. 다기관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해서지요. 지역사회 내 어디서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지역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가에 대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 8) 질문

포렌식 인터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8-1) 답변

포렌식 인터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5% 정도입니다. 수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펀딩을 받으려고 하고요.. 인터뷰이를 3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포렌식 인터뷰를 아이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선진사례가 확립이 되어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기도 하고 수십년 동안 그렇게 확립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장애인의 경우는 아직 좀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9) 질문

포렌식 인터뷰를 잘해도 어떤 일, 어떤 장소 등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노동인신매매 중 수반되는 폭력에 대해서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계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 9-1) 답변

기소든 수사든 스토리를 말해주고 팩트를 모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 갭을 채우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이죠. 장애인의 경우 기억하는 것, 타임라인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트라우마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 수집, 모든 기록을 가져와서 진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한테 언제 월급을 받았는지, 크리스의 동료 직원들 (크리스가 얼마나 일했는지 봤던 사람) 인터뷰. 물리적 증거 수집. 환경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기소하기도 하고요.

## 10) 질문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원양어선에서 10년이 넘도록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나중에 준다고 미루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줄 돈이 없다고 가해자는 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 중에 수사관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고, 숫자도 알고, 문자메세지도 보낼 수 있고,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일을 잘했는데 비장애인 같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장애여부에 대한 진단은 의사 혼자 정하는 것이 분명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10-1) 답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어업, 산업도 미국에서도 정말 도전을 맞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노동했다고 확신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모집을 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어선에 배치하고 다른 어선에 배치하고 이러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장애를 갖고 있는지, 장애 정도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강압에 의한 노동의 경우, 일단 수사관이 피해자의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일이 아닙니다. 상황을 살피는 것이죠. 전문가의 분석, 장애 정도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요. 앞서 사례를 말씀드릴 때 언급한 어떤 피해자가 몇 살 연령대 정신연령 갖고 있다고 말한 건 모두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공식처럼 같은 배경의 상황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강요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까 따져볼 것 같습니다. 특정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어떤 것을 했는지 살펴볼 것 같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장애정도만 보곤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네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11) 질문

포렌식 인터뷰나 트레이닝 등 사법적으로 마련된 협력체계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주 섬세하게 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발전된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계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이유는 일선에서 진행하다보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미국의 경우



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 11-1) 답변

포렌식 인터뷰의 경우 여러 가지 사건을 미국 전역에서 거친 이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증인을 조작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고 목격자들로 하여금 특정 진술을 하도록 만들었거나 그런 인식이 있던 이후에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포렌식 인터뷰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각 주의 법원이 이를 이행하고 어떤 주의 경우는, 12세 이하 14세 이하 특정 학년, 특정 정신연령 이하이면 포렌식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점점 더 표준화 되고 있고요. 법무부 내 범죄피해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전문가 의견도 수집하고 회의도 조직하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 포렌식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같은 경우 지난 3~5년동안 같은 기술들을 사법집행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도 있지요. 사회복지사도 교육을 받기도 하고 좀 더 우리는 사법집행관들에게 이런 기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교육 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기술이 유용하기 때문에 세미나 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어떤 기준은 법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부 주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어떤 주는 법원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포렌식 인터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치 않아서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 12) 질문

미국의 법무부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12-1) 답변

인신매매를 전체적으로 퇴치하는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게 법무부의 우선순위이지요. 팀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기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상을 만드는 것인데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 NDRN 가서 몇 번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장애인들의 강제에 의한 노역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우리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의 트렌드도 소개하죠. 절도, 사기 사례를 조사하면서 발각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교육합니다. 사기, 절도, 사회안전보장 수당과 관련된 것들도 봐달라고 인식을 제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분석도 하고 전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들을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으면 경찰에 전할 하던지 법 집행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달합니다.

### 13) 질문

장애 대상으로만 하는 전문 수사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을 쌓는 효율성을 위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수사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3-1) 답변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모든 요소들을 특별하게 모아서 다기관적인 팀이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부분이 성적인신매매에 집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강제노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연방케이스의 경우 저의 유닛을 거치고 갑니다. 장애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성적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차이를 말하자면 성적인신매매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모두가 거기에서 일하죠. 제가 강제노동케이스 가지고 일할 때, 농장, 어업,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 업계의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처럼 피해자들이 특정한 그룹이면 그걸 찾아야하는 것이죠 저는 인신매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러 나가야합니다. 업계전문가, 업계옹호자. 그리고 저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많은 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100%로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노동인신매매만 만드는 것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유닛이 노동 초국가적인 인신매매인데 성인인신매매를 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성인인신매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하고 있으나 특수 전문화도 중요한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전문가를 찾아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자 마무리 멘트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징역을 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면 이미 승리한 것이고. 나머지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록 3 제3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 제3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내용

가. 일 시 : 2020년 11월 4일 (수) 9:30 ~ 11:30

나. 발제자 : Lori Delagrammatikas

- 전미성인보호서비스협회(NAPSA) 이사직 수행 2년
- 캘리포니아 성인보호 서비스 담당 3년
- 성인 취약계층의 학대, 방치, 착취 문제 조사 관련 담당 8년
- 취약계층 학대 문제 현장경험 20년

다. 발제 내용

##### · 전미성인보호서비스협회(NAPSA) 소개

전미성인보호서비스협회는 미국 50개 주에 회원을 둔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이며 1989년 설립된 이후 성인보호서비스(APS)프로그램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노인 및 성인 취약계층의 학대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국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상대로 성인보호서비스의 핵심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의 임무는 국가, 주, 지역 정부차원에서 성인보호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착취, 방치 및 학대 피해 노인 및 성인 장애인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 신고, 대응하며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 1) 성인보호서비스(APS)의 정의

- 성인보호서비스는 60세 이상 노인 및 성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학대, 방치, 금전적 착취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해준다
- 각 주의 법에 따라 학대 피해 신고를 접수, 조사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조항으로 정해져 있다
-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은 없지만 범죄 피해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성인보호서비스 담당관들은 긴급대응팀의 역할을 하며, 의료관계자, 소방관, 사법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모든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2)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의 특징

- 정부 또는 정부에서 계약한 기관이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 미국의 모든 주에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이 있음
- 전미성인학대신고시스템(NAMRS) 발표 최신 자료인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79만 1,161건의 학대 신고에 대응했으며 이는 매달 약 6만 5,930건에 해당한다.

## 3) APS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선택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 APS는 서비스 수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장애를 가진 노인과 성인이 본인의 가정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 가장 극단적인 경우엔 후견인 제도를 요청한다
- 대부분의 미국 내 APS사례는 가족 구성원, 친구, 돌봄 노동자에 의한 학대, 방임, 그리고 착취를 포함한다

## 라. 질의응답

### 1) 질문

P&A와 APS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1-1) 답변

P&A는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학대를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당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임무 중 주요한 한 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분리가 된 역할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소송인 것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는데 P&A가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보통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부당대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구속이 되어있다거나 묶어놓거나 부당대우가 발생했을 때 멈추도록 지시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떤 시설 내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PS는 이와 반면에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피해자를 상대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법기관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 2) 질문

사회복지사들이 학대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한 이후에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학대가 재발했을 때에 대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1) 답변

미국에도 다시 지역사회에 있다가 다시 학대의 장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보통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는데 보통의 경우,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과 서비스를 연계시켜주고 싶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류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중간에 틈이 있어서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를 관리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학대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대로 돈이 많이 들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 3) 질문

기관 당 인력이 얼마나 있나요. 잘 아시는 주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3-1) 답변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다보니까 각 주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1000명 정도 APS 담당자들이 있고요.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내 경우에는 로스엔젤레스에 300명이 있습니다. 엘에이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고령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법기관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가 있는데요. 독특한 사례입니다.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이 서비스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나머지가 갈려져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장애를 대상으로만 하는 서비스가 있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 4) 질문

사법기관가 직접 연결된 주가 메사추세츠 주 인가요?

##### 4-1) 답변

그곳은 인디애나 주입니다. 그러나 그곳도 이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총을 갖고 다니고 경찰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자기결정이 없는 분들의 신고를 받는데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이러한 확증 요율이 전국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케이스에서는 신고가 결정권 없는 사람으로부터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질문

연방 주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주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연방 차원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주별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5-1) 답변

연방은 경직되어 있어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주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전국적인 숫자를 드릴 순 없습니다. 북송아와 바나나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연구자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런 숫자를 모른다면 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통계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방정부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50개의 주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연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옹호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모든 주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는 것도 만들었지만 연구를 위해서 미래에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 사례를 드리시면 APS의 좋은 결과는 잘 케어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요양원,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람마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연구를 하는 거죠.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양날의 검이죠. 그럼에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 질문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두 계층의 통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6-1) 답변

두 그룹을 같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격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사례로 예를 들면) 노인들의 경우엔 프로그램 풀케어를 바라고 젊은 장애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 7) 질문

가족과 장애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 욕구를 어떻게 일치시키나요?

### 7-1) 답변

중재자가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지점을 찾아야 하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안전하고 가족들도 플랜을 따를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이 중재가 가정법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점을 찾도록 해야합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팀미팅이 생긴 것은 아동복지서비스인데요 APS 보다는 아동쪽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팀 미팅을 통해서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질문

한국에서는 학대 이후에 지역 사회로 돌아갔을 때를 고려해서 통합돌봄이라는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APS의 경우, 민간 차원의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미국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8-1) 답변

민간이 하든지 공공이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표준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민간 분야에 맡겼다가 어떤 공공 분야에 맡길 때 지속적으로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장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요?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발달장애인일 경우에, 사례관리의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일생에 걸쳐서 케이스매니지먼트 대상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그러면 케이스 매니저를 배정하여 감독을 받게됩니다.. 니즈가 충족되는지 보고 케이스매니저가 그 사람을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돌봐주는 것이지요. 사실 전체 시스템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케이스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이 학대를 멈추도록 하자고 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 질문

사법절차에 대한 지원은 APS의 임무는 아닌 것인지, 아니면 이 임무는 누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9-1) 답변

APS는 사법기관과 함께 협력합니다. 사법기관에서 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에는 피해자 옹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법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APS는 사회복지 담당이고 사법기관은 형사행위 담당입니다.



## 10) 질문

'능력평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10-1) 답변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능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법적인 용어로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할 때 이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동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라든가 정신과 의사분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들에게 역량 선별을 맡깁니다. 역량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능력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장애당사자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지요. 보통 이러한 서비스들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을 갔는데 학대피해가 발생한 곳일 때 “저는 APS에서 왔는데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왔어요.”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사라지라고 거부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냐고 (안전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매 달 받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그 답에 따라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가겠지만 답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정신 전문의와 함께 그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봄 담당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예요?”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드립니다.

## 11) 질문

APS기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코로나19에 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한국도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도 장애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판단된 것이지요?

## 11-1) 답변

최근에 APS에서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할 때 어떻게 좋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함으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괜찮은지, 우리가 뭘 가져가야

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고립의 기간 동안 보이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신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집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신고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신체학대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금전적인 피해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치매노인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보였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광장 공포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트라우마의 상태로 유지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담당자들의 트라우마도 염려가 되고요. 학대피해장애인들을 도우면서 2차적인 트라우마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게 일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죽는 것에서 오는 트라우마도 매우 크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셀프케어와 트라우마 케어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연 락 처      02)2675-5364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ISBN 979-11-85498-89-8 93360

---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